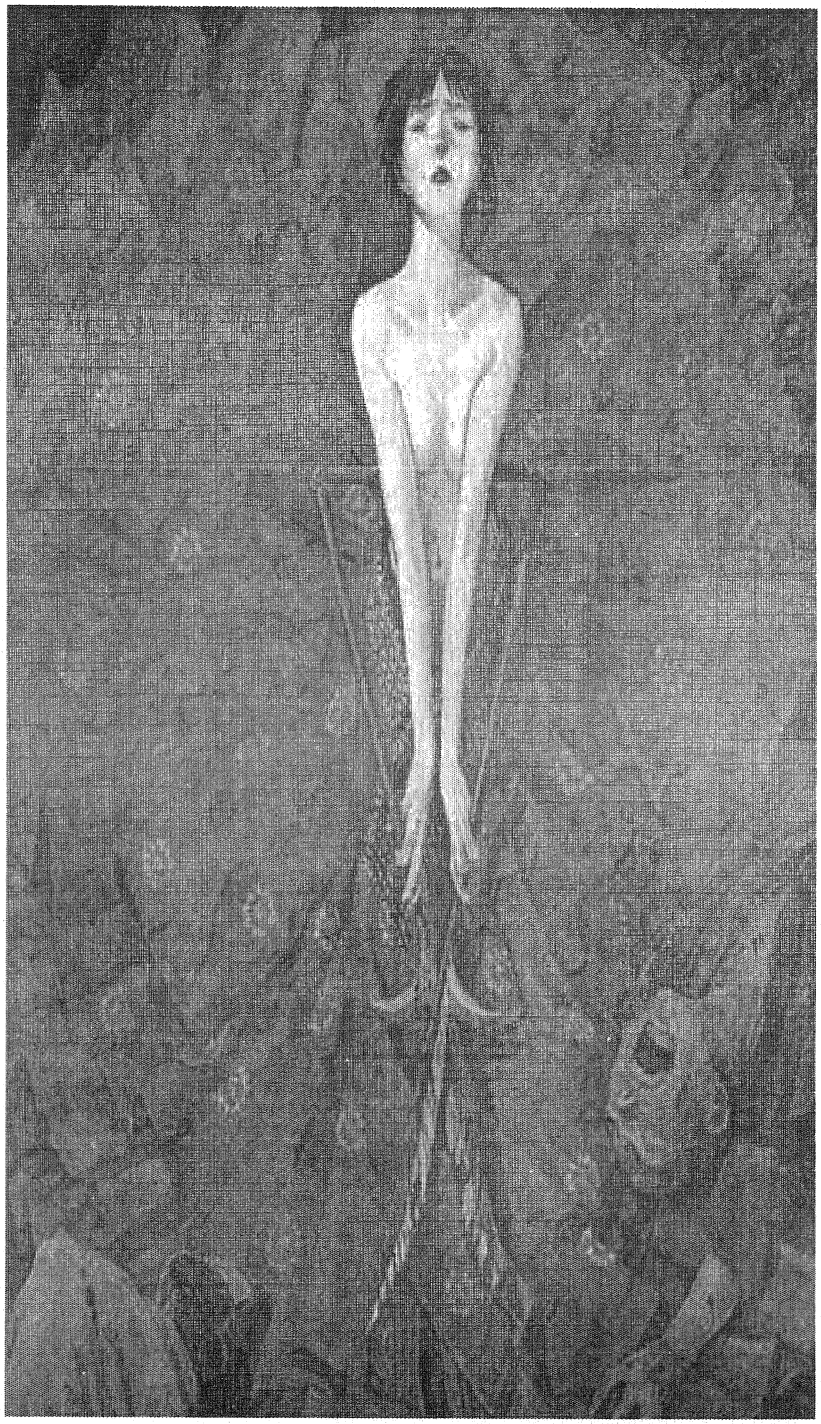
호주제 너에게 선전포고하노라!!

자유
두번째 이야기

2기 경상대 여학생위원회



기획글
호주제의 그 모든것에 대하여

- 역사적 배경
- 외국의 호적제도
- 호주제 폐지대안
- 호적제도에 관한 법률상식
- 호패모를 아시나요 등등

수기-다리가 가늘어 반바지를 못입어
의식조사
제사문화에 대하여
책-여성의 성공, 왜 느릴까
공연-밥퍼 랩퍼. 여악여락
영화소식- 아이즈 와이드 셧
정선호사건, 그 이후
교수와 제자사이???

농대 여학생
드립니다.



우 "자유지" 여름호에 대해

지난 겨울에 만들어진 창간호에 이어 우리는 또 다시 자유지를 상정한다. "자유지"는 학술지와 자료집, 소식지 등 기존의 모든 단위 발행 인쇄물에 대한 새로운 모색으로 고민되어졌다. 자유지 '여름호'에서는 얼마 전부터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호주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호주제로 인한 피해사례를 고발하며, 호주제 폐지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인간은 모두 법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말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이 당연한 사실을 당연한 권리로 쟁취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수많은 여성들의 투쟁이 있었다. 유럽에서 시작되었던 여성의 선거권과 참정권의 획득과정, 17·8세기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비인간적으로 착취되었던 여성과 어린이의 노동에 대한 권리 투쟁 등을 비롯해 20세기에 들어 인간이지만 여성이기에 겪어야만 했던 수 많은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의 과정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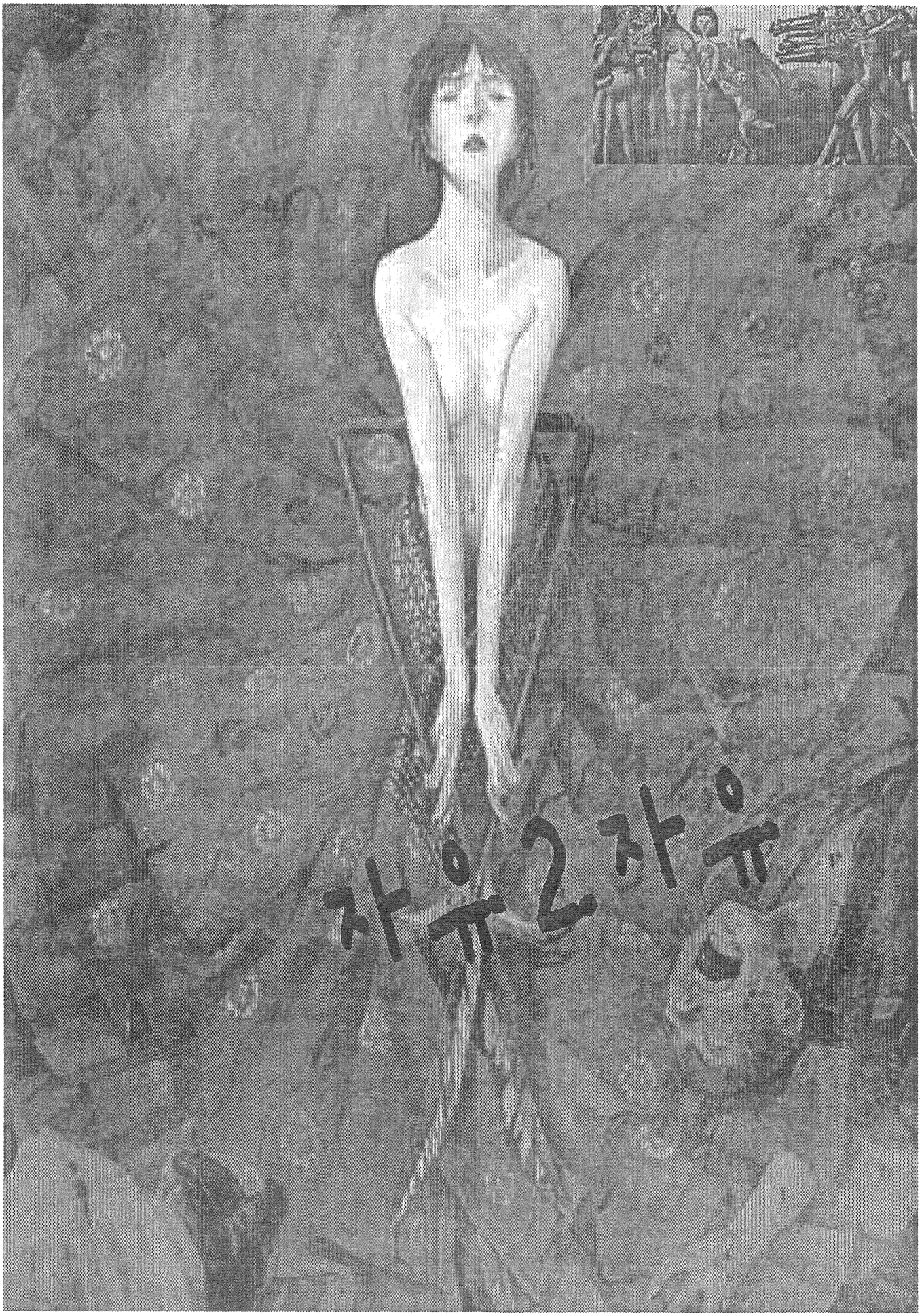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한다.

왜 호주제인가?

완전히 여자들 세상이라고. 여자들 참 많이 살기 좋아졌다고.

그래, 우리 할머니의 삶보다, 우리 어머니의 삶보다 나의 삶은 좀 더 평등해졌는지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은 이 사회에서 주체 세력이 아니라 남성들을 보조하거나 주변인의 몫을 강요받고 있다. 호주제 또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한다. 호주제는 가장 쉽고 강력하게 여성을 옭아매고 있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부산물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가부장제는 '한 가정의 대장은 아버지다' 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호주제는 한 가정에는 중심 기둥이 있고, 이 기둥은 여지없이 아버지가 되며, 혹 아버지가 부재할 경우엔 아들이 그것을 이어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가정에서 조차 사회에서의 위치와 마찬가지로 주변인이 된다. 여성의 삶이 언제까지 주변인으로서만 존재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자유지 여름호에서 호주제 철폐의 첫걸음을 시작하려 한다.





contents 2000

자유로

특집기사 호주제의 모든것

2 인사말

4.5 호주제의 함의
호주제도에 담긴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

6.7.8 역사적 배경
호주제를 키워준 배후세력을 찾아라

9~13 생활속의 호주제 피해사례

14~18 외국의 호적제도

19~23 호주제 폐지!! 그 대안은…

24~26 호주제 존속
부계혈통을 지키려면 호주제 필요하다

27~30 호적제도에 관한 법률상식

의식조사

31.32 의식조사
경대인들은 호주제에 대해

33~37 인터뷰
호주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

38~39 여아낙태
나는 M이다

40.41 문화(공연소식)

수기

42.43 수기
다리가 가늘어 반바지를 못입는…

문화

44.45 문화(책)

46.47 가부장에 도전하는 며느리들
48.49 그날 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50.51 문화(영화)

52~55 부모성 함께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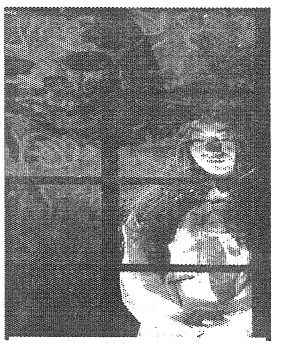
56.57 호 · 폐 · 모가 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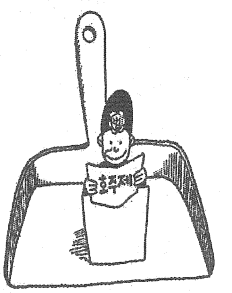
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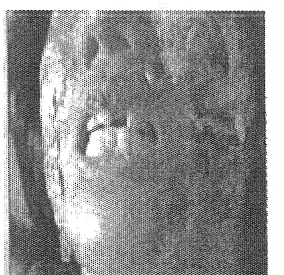
58~61 정선호 사건, 그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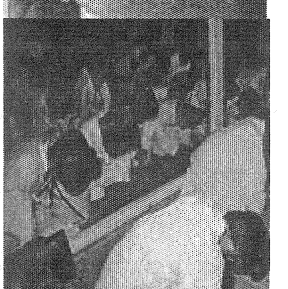
62~64 교수와 제자사이
이충섭교수의 제자 성추행사건을 바라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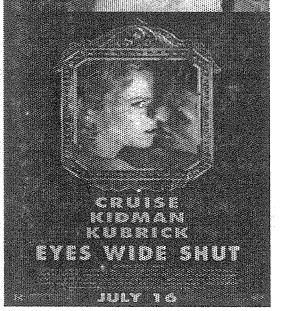
65 끝말











누가 호주제를 아시나요???

호주제도에 담긴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

우리나라 국민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처음으로 호적에 기재되어 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 여러 가지 신분행위를 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호적에서 제적처리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공부(호적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증하는 제도를 호적제도**라고 한다.

각 나라마다 신분을 증명하는 제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나 우리나라의 호적제도만이 유독 말이 많은 이유는 이것이 철저한 남성중심적, 부계혈통위주의 가계승계제도이기 때문이다.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되는데, 호주는 장자에 의한 강제 상속을 원칙으로 계승되나 1990년 민법개정을 통하여 호주가 가지는 권한의 약화, 호주의 임의 승계제도 등 호주제도가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정된 호주제도 역시 부계혈통의 계승자인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관념적인 가족단체를 의미하는 '가(家)'제도는 남아있으며, 그 '가(家)'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가계승계제도 역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의 의식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단면을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출생성비의 불균형 심화 현상이다. 부계혈통에 따라 남자에게 우선적인 승계권을 인정함으로써 남아숭배풍조를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대를 이을' 남아를 얻기 위해 '불필요한 여아'를 낙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아이의 경우 남녀 성비가 3배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남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여자아이가 희생되어 갔는지 알 수 있다.

호주제도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호주 승계순위를 통해 더욱 극명해진다. 민법 제 984조는 호주승계의 순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호주승계에 관하여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직계비속여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호주의 아들, 딸(혼인한 딸은 제외된다.), 처, 어머니, 며느리 순으로 호주의 지위를 이어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주가 사망했을 때 외아들은 이미 사망했으며 그에게 1살된 아들이 있을 경우(즉 호주의 손자)라면,1살된 손자가 호주승계를 하게 된다. 이제 호주의 처(새로운 호주의 할머니)나 호주의 장성한 딸 (새 호주의 고모) 그리고 며느리(새 호주의 어머니)는 1살된 사내 아이가 호주로 된 '가'의 가족원이 된다. 부계 혈통을 중시하는 대목은 민법 제 984조 제 1호에 여실히 드러나는데 부계혈통을 이어받은 남자 중에서도 적서를 차별하여 혼인 중 출생자가 우선적으로 호주가 되지만, 혼인 외 출생자라 할지라도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호주의 지위를 승계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적서의 차별과 양성차별로 대표되는 봉건시대의 가계계승 관념이 호주제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아들이나 손자가 없을 경우 혼인하지 않은 딸이 호주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딸은 나중에 혼인하게 되면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호주로 되어 있는 '가'에 입적해야 하므로 호주승계가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양자나 혼외 자식을 인정함으로써 수많은 딸들은 서러움속에서 살아야만 한다.

부계 혈통만을 중시하고 모계혈통을 배제하는 현행 호주제도는 부모가 이혼한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날로 증가하는 이혼율과 이혼 후 자녀 양육을 대부분 어머니가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 781조 제 1항의 부가 입적 원칙에 따라 자녀들은 아버지가 호주로 되어 있는 '가'에서 빠져 나와 어머니의 '가'에 입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모든 관계가 단절된 후에도 호적상으로는 계속 같은 '가'에 속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당사자인 자녀의 의사에도 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정서적인 면에

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물론 민법 제 784조에서 夫의 혈족이 아닌 妻의 직계비속의 입적에 관해 夫의 동의를 얻어 그 家에 입적할 수 있고, 그 직계비속의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부계혈족이 아닌 자의 부가입적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밖에 이해될 수 없다.

또한 이 조항에서 우리는 여성차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호주제의 모습을 한 눈에 알 수 있는데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재혼한 남편의 가에 입적시키기 위해서는 재혼한 남편의 동의와 전 남편의 동의가 이중으로 필요한 반면, 남편이 외도한자식을 입적시킬 때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원칙에도 위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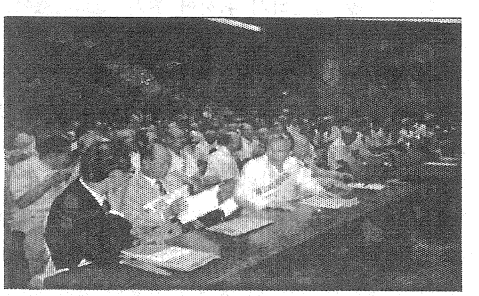
호주제도 속에서 드러나는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호주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유교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가족문화속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제사는 아들이 모셔야 하고, 남의 집 귀한 딸이기도 한 며느리는 온갖 가족 대소사의 뒤치닥꺼리로 허리가 휜다. 친정 부모 생신보다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시댁 고조부의 제사가 더 중요하며, 시집 간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말로 이 모든 것이 합리화 된다.

여성이 결혼을 하여 남자의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남성이 시댁 부모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자집에 들어가 사는 것은 특별한 일로 취급받고 남자의 무능력함을 먼저 의심한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은 아버지에게 주어지고, 애비없는 자식은 조금만 잘못을 해도 '후레 자식'이라 주위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직업을 가진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 아무리 능력있다고 인정받아도 집안일에 소홀하면 진정한캐리어 우먼이란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집안 일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직장에서는 능력까지 갖춘 수퍼우먼이 되어야 한다. 전업주부라 할지 라도 집안일에 관한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김없이 아버지의 주장대로 결정된다. 새로운 가족법의 개정으로 위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고쳐지긴 했으나 오랫동안 우리의 어깨를 눌러온 가부장적 요소들은 답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몸속에는 아버지의 피뿐만 아니라어머니의 피도 똑같이 반반씩 흐르고 있다. 그러나 **부계혈통에 따라 家에 입적해야 한다는 현행 호주제도는 모계혈통을 인정하지않을 뿐더러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까지 조장하고 있다.** 현대의 변화된 가족제도와 부부관계, 민주화된사회의식 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호주제도를 폐지하자는 각계각층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자유 2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재혼한 남편의 가에 입적시키기 위해서는 재혼한 남편의 동의와 전 남편의 동의가 이중으로 필요한 반면, 남편이 외도한자식을 입적시킬 때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원칙에도 위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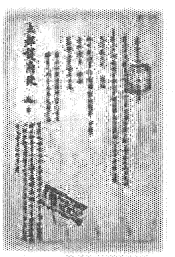


누가 호주제를 아시나요???

찾아

호주제도를 키워준 배후세력을 찾아라

찾아



형사 :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야? 실제로 조선시대의 호적문서는 지금의 호주제와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었던 거야?

조선시대의 호적문서 : 그것은 아닙니다. 호주제의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곧잘 저를 입에 올리는데 정말이지 저는 그것과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답니다. 주로 세원확보를 위하여, 인구의 유입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리고 양인과 천민의 신분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제가 존재했던 것이지요. 사실상 기록의 의미만 지니고 있었던 거지요. 지금의 호주제처럼 백성들의 생활을 옭아매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안 믿는 눈치신데 정말 억울합니다. 또 제 시대까지는 균분상속의 원리가 지배적이었지요. 장자, 차자는 물론 딸과 아들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의 균등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균등분재는 제사, 가계계승, 결혼제도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재산이 장자에게만 집중되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정 못 믿으시면 어디 고려시대 호적제 어른을 만나보십시오. 제 귀에는 호주제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일제 시대의 잔재라는 주장이 들립디다.

고려시대의 호적제 : 국가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이야, 조세를 징수하고 요역을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겠어? 바로 호구조사가 필수적이지. 그럼 호구조사결과를 문서로 기록한 게 뭐야? 그게 호적제도야. 호적제도는 고조선시대부터 이미 존재했다고 추정하고들 있지. 그런데 고려시대 즉, 내 시대에 들어서 호적제도가 체계적으로 자리잡고 그 후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었어. 그 때는 지금처럼 호주를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부부, 부자, 형제관계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가족관계가 기재되었지. 호주가 저 세상 갔다하면 말이야, 아무리 장성한 아들이 있다 하여도 아내가 호주가 되었어. 호주인 어머니까지 이 세상에 없다 하면 각자 살림을 차려 하나의 호를 형성하였지. 그러니까 호주권의 승계란 것이 없었지. 제사에도 딸、아들 구별없이 참여하였고 재산도 차별없이 나눠 가졌어. 그런데 조선에 들어서면서 말이야, 통치이념으로 받아들인 성리학을 사회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종법제를 가족제도의 기본으로 삼았지. '종법'이란 것은 또 뭐냐.

고대 주나라에서 정립된 것으로서 '적장자 위주의 가계계승과 그를 바탕으로 한 제사의례'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자네,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아무리 옛날 얘기가 지루하다 해도 그렇지. 자네가 나를 이리 대하면 안 되는 거야. 끝까지 열심히 들어봐. 그럼 내 얘기 다시 시작하지. 그런데 그 성리학이 조선 사회전반에 영향을 끼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의 일이었지.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적장자에 의한 재산상속과 이를 통한 가계계승관념이 뿌리 내렸어.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장자우대며 여자차별의 경향이 굳어졌지. 그러나 호주권의 상속이라는 제도는 조선 말에도 없었어.

조선민사령 : 맞아요. 제가 일제시기 민법에 해당하던 조선민사령이에요. 1912년 4월에 발효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절 의심하시는 거에요? 나 원 참. 저는요, 조선인의 친족, 상속에 대해선 조선의 관습을 따른다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무슨 법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에 호주제가 저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고 밝혀 두고 싶네요.

조선호적령 : 1923년에 시행된 조선 호적령입니다. 1909년에는 민적법이 제정되었어요. 민적법으로 결혼, 출생, 사망, 양자 등 모든 신분 사항에 대한 신고는 호주의 의무로 규정되었어요. 모든 신분행위가 호주의 관여하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로써 호주가 '기'의 '주재자'

임이 법적으로 선언되었죠. 호주가 '가'의 우두머리로 우뚝 선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 호적법을 그대로 모방해 놓은 저 조선호적령을 적용하게 되요. 호주를 중심으로 '가'를 하나로 뭉치게 하면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는 더 쉬워졌죠. 국적법 등 여타의 신분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식민지 조선인에게 호적은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identify) 유일한 문서이며 제도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식민지국가의 통치에 있어서 가졌던 중요성을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애써 부인하진 않을께요. 애당초 조선을 식민지 국가로서 보다 강력하게 하나로 통제하고자 태어난 전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조선 민사령, 그 어른도 이 문제에 깊이 연루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어른껜 죄송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다 밝히고 지금부터라도 속 편히 지내고 싶어요. 그래요. 그 동안 호주제로 피해 받는 사람들을 보며 참 많이 괴로웠어요.

조선 민사령 : 도대체 누가 그 판 말을 합디까?

형사 : 1차 (1921). 2차 (1922), 3차 (1939) 개정이 있었고, 특히 1939년 제 3차 개정 때는 일본에서 씨(family name)제도를 조선에 데려왔지? 사실상 일본의 씨제도는 호주제도와 가족(이에)제도를 늘 대동하고 나타나지. 그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니가 모를리 없어, 안 그래?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식 가족제도의 완결을 이루기 위한 너의 전략이 아니었나? 일본의 씨제도를 불러와 대면시켜줘?

조선 민사령 : 허허. 이에제도는 메이지 시기 (1868-1912)의 고유한 가족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고안된 근대적 산물이에요. 이에제도로 인해 일본의 전 국민이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으로 조직되었어요. 또 개개 가족은 별개의 가족이름(씨)을 가질 수 있었고 이 이름으로써 하나의 가족으로 등록되는 것이었죠. 전에는 씨를 가지지 못하던 대다수 평민이 씨를 갖게 됨과 동시에, 전 주민이 국가가 승인하는 문서에 등록이 됨으로써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모형을 가진 가족국가가 건립되었죠. 그런데요, 일본식의 씨는 조선의 성(姓)과는 대단히 다른 것이었어요. 일본의 씨의 경우에는 말이죠. 형과 아우가 각기 호주로서 자신의 가족들 고유의 씨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족의 씨가 달라질 수도 있단 얘기죠. 그런데 조선에서 성이란 것은 부계계통의 엄격한 표식이고 결코 변화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엄청나게 혈통이 정체되는 것이죠.

형사 : 그럼 창씨개명은 어떻게 된 거야?

조선 민사령 : 근데 왜 자꾸 옛날 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에이, 참. 창씨개명으로 이에제도를 조선에서 확실히 성숙시키고자 했어요.

형사 : 그래서?

조선 민사령 : 모든 조선의 주민들도 천황의 자식들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일본식의 씨제도와 그와 관련된 제도들은 1945년 이후에 곧바로 폐지된 가족제도들이에요. 뭐, 이에제도의 골격인 호주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조선의 가족전통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면서요? 메이지 시대 일본의 호주제도를 그 해결책으로 밀고 나갔다던데요. 가족간 신분관계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주게되는 호주제도를 그것도 한국의 가족법 제정과정에서 별반 토의도 없이 채용하다니. 식민지 유산에 대한 성찰이 얼마나 부족하였는지 알 만하군.

조선 호적령 : 식민지 조선에 도입된 호주제도는 가족생활의 모든 원칙들에 영향을 주었어요. 재산상속의 측면에서 특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제가 알기로는 탈식민 이후에도 재산상속에 대한 일제시대의 원칙들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어요. 조선시대의 관습과 일본의 관습, 과거와 현재의 관습을 분별없이 모두 "관습"이라고 부르면서 탈식민화된 한국사회에서 그대로 계속되었더군요. 호주제도에 있어서 재산권 없는 호주권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예요. 호주의 계승은 언제나 재산상속을 수반하였죠. 호주권의 계승과 동시에 앞의 호주의 재산이 새 호주에게로 계승된다는 거예요. 이 때의 재산 개념에는 호주개인의 재산이라는 의미보다는 가족에게 속하는 재산인 가족 재산의 개념이 내재해 있어요. 호주는 이 재산을 관리, 운영, 계승하는 존재로서 이는 호주라는 지위에서 재산에 대한 지위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호주권을 물려받는 대개의 장자가 전호주의 전재산을 계승하게 되며 차자 이하의 아들은 장자의 재산에서 어느 정도를 분할 받을 수 있는 정도죠. 딸들은 재산 상속에서 제외되죠. 장자권리의 옹호, 기혼여식 및 미혼여식에대한 명백한 차별, 호적에 적힌 가족성원을 재산상속의 일차적 대상으로 보는 것 등은 재산상속에 대한 일제시대의 원칙들이라 할 수 있죠

누가 호주제를 아시나요???

호주제의 배후세력을 찾고자 나는 고려시대의 호적문서에서 일제시대의 조선 호적령까지 여러 행정제도들을 만나 보았다. 그 결과, 고려시대의 호적문서에게서는 지금의 호주제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조선시대의 호적문서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제사를 통한 가계승계의 관념은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찾아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아들에 의한 제사의 독점과 이를 통한 가계승계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제례에서는 제사와 가계승계가 별개의 문제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조선 후기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그 당시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었던 특수한 사회경제적 · 이념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서 역사의 어느 한 시기에 나타났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고로 호주제를 우리 민족 고유의 산물이라 칭하는 자는 역사 공부를 다시 하라. 현행 호적제도의 뿌리는 바로 일제침략 후의 민적법에 있었다. 민적법은 조선호적령이 공포되기 전까지 적용되었고 조선호적령의 시행은 호적제도가 완전히 일본식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호적령 그리고 조선민사령으로 일본은 조선인들을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국가'에 편입시킴으로써 보다 강력하게 조선을 통제하고자 했다. 조선민사령은 계속되는 개정을 통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한다. 일제시대의 민법에 해당하는 것이 조선민사령이니 호적제도를 그 핵심으로 하는 조선호적령보다는 식민지 통치에 대한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리라 추측해 본다.

1945년 탈식민 이후에도 호주제만은 남아 있었다. 대한민국수립이후에도 호주제는 남아 있었다. 1948년 대한민국수립 이후 조선의 가족전통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당시의 지배적인 가족법의 제정원칙은 현실존중론 (점진적 개혁론; 장경근론)과 전통존중론 (김병노 법전편찬위원장) 이었는데 이들 원칙에서 보면 한국의 전통 혹은 미풍양속을 가족법의 가장 중심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전통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되지도, 검증되지도, 논박되도 않은 채 막연히 조선시대의 윤리적 규범인 것으로 가정된다. 전통존중론은 조선시대의 전통을 추구하고 식민주의를 부정하려 하였다. 현실존중론은 가족법의 제정에 있어 전통과 현대간의, 동양과 서양의 법체계간의 차이 및 절충이라는 커다란 과제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깊은 고민과 탐구보다는 유사한 고민에 대한 메이지 시대 일본의 해결방식이었던 호주제도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야 말았던 것이다.

자유 2

이때까지 글을 읽어 오신 여러분들은 호주제가 얼마나 부당한지 다들 이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정작 호주제를 시작한 일본에서 조차 호주제가 사라졌는데 우리나라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호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당함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사례별로 모아 봤습니다. 사례들은 여성신문 '양정자 박사의 호주제 클리닉' 이라는 코너에서 발췌했습니다.

"소녀 가장 누나 제치고 남동생이..."

생활속의 호주제 피해사례

문 나는 73세 병든 할머니와 고1, 중2에 재학중인 두 남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19세 소녀가장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매일 술 마시고 노름을 해서 빚을 지고 거기다가 때리기까지 하는 아버지를 견딜 수 없으셨는지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알 길이 없자 아버지도 어머니를 찾는다 집을 나가시고는 연락 한 번 없습니다.

그 후 할머니가 우리들을 돌보아 주셨는데 할머니도 병이 나 일을 할 수 없게 되신 후부터 제가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이웃 아줌마가 소개해 준 양장점에 나가서 여러 가지 잔심부름을 하고 얼마씩 벌어서 생활에 보탰습니다. 우리 집을 갖는 것이 소원이어서 국민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려고 주택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에서는 내가 미성년자라 청약저축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 말해 우리 집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가입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원 아저씨는 사정을 들으니 참 안됐다면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호주승계 예정자면 가입할 수 있는데 남동생이 있어 저는 가입할 수 없다 했습니다. 미성년자라 안된다면 나나 남동생 모두 안되어야지 장남인 남동생은 가입할 수 있고 나는 안된다니 그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주택건설촉진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은 무주택자를 위해서 정부가 기금을 설치해서 건설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주택건설촉진법 제 3조 1호, 제 10조).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해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이 법은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던가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특히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동안 실제로는 딸들이 희생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도와온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우리 입법자들의 의식 속에는 남자들이 가족을 책임지고 특히 장자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우리 민법상 호주제도가 이를 간접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미성년자라도 세대주로 보아서 무주택일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조 제7호-제8호).

하루 빨리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이해를 따지지 않고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는 귀양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해 줄 책임이 우리들과 특히 입법자들에게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누가 호주제를 아시나요???

생활속의 호주제 피해사례

"수술동의서 서명은 남편과 시댁식구만 가능???"

문 저는 지난 토요일 드디어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분만대기실에 들여보내고 초조한 마음을 추스리며 기다리고 있었죠. 순산을 기대했지만 난산이 되어 아가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얼마 후 의사는 저를 불러 서둘러 수술확인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더군요.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볼 여유도 없이 확인서를 받아들고 의사는 들어갔고...몇분도 되지 않아 아기가 나오고 산모도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더군요.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동의서라고 하는 것이 참 웃기는 것이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보호자를 '남편 또는 시댁식구'라고 규정해 놓았더군요. 그 병원은 산부인과를 전문으로 하는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큰 병원입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친정 식구들만 있었다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동의서를 받지 못해 수술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인지...친딸과 외손주가 위급하다고 하는데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발을 굴러야하는 엄마가 생겨도 된다는 것인지... 물론 생명을 앞에 두고 의사들이 아무 조치도 안하지는 않겠지만 이거 웃기는 일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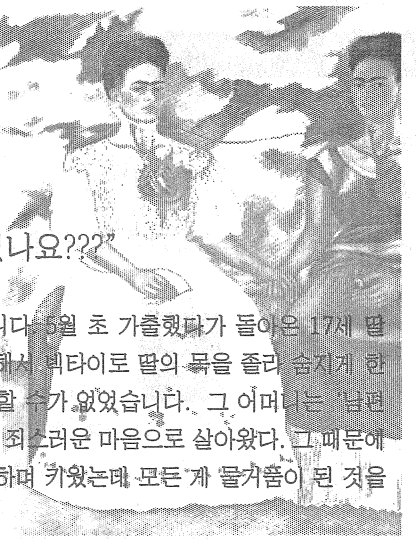
답

먼저 아빠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민법에서는 여자는 출가외인이라는 전통적인 사상에 기반을 두고 기혼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호주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구민법 제 934조)고 후견인의 순위를 법정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기혼여자라는 명칭을 없애고 기혼자로 통일하고 후견인의 순위를 배우자로.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민법 제 934조, 제933조). 기혼여자의 경우 남편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면 구법과 달리 시부모나 시댁 식구가 아닌 친정부모나 친정 식구가 후견인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호주제도가 현행 민법상 명문화되어 있어 여자가 혼인을 하면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고 자식을 낳으면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79조, 제781조 1항). 그래서 조문이 몇개 민주적으로 바뀌어도 호주제도가 계속 존치하는 한 혼인한 여자는 출가외인으로 남편과 시집에 속한다는 이 사회에 잔존하는 의식을 바꿀 수가 없어 아직도 최첨단 과학의 실행지인 병원에서도 그런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이에 따라 호적제도도 바뀌어 귀하의 부인과 같이 촌각을 다투는 딸의 위급한 상황에 친부모가 옆에 있으면서도 수술 동의서에 동의할 권한이 없어 그 남편이나 시댁 식구를 찾아야 하는 비극적이고 비인간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하겠습니다.

생활속의 호주제 피해사례



"상품아닌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없나요???"

문 저는 대학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5월 초 가출했다가 돌아온 17세 딸이 순결을 잃었다는 사실에 격분해서 넥타이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어머니의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남편을 만날 때 순결하지 못한 몸으로 만나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다. 그 때문에 딸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애지중지 하며 키웠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것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 친구 분들이 아들이 동정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딸의 경우와 똑같은 언어와 행동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남자에게 동정은 생명보다 귀중한'게 아니고 '여자에게 순결은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잘못된 교육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남자는 인간이라 동정을 간직하느냐 유무에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여자는 인간이라기보다 상품으로 취급되어 순결 유무에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

자녀와 아내는 가장이나 남편에게 속한다는 고대 · 중세의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의 순결은 자녀와 아내에 대한 가부장의 소유권을 확고부동하게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녀와 아내는 가부장에게 속한 소유물로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가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군주제가 민주제로, 농경사회가 상공업사회로 바뀐 현대에서는 개개인은 각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가부장이나 호주에게 속한 자가 아닌 자신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 되는 사회로 바뀌는 법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남녀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성윤리에 대해서는 이중적 윤리관이 자리잡고 있고 남녀를 차별하는 봉건의식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소유물로 순결을 간직했다가 주인에게 바쳐야 한다, 그렇지 못한 여자는 주인에게 큰 죄인이라는 이 사건의 어머니와 같은 의식을 하루 아침에 전부 없앨 수는 없지만, 민주헌법을 기반으로 제정된 법에서만은 이런 의식을 불식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아직 우리 법 규정에까지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주제입니다.

호주제가 우리 법규정에 남아 있는 한 사람, 특히 여성을 소유물화하는 의식은 우리 사회에 계속 잔존해서 '여성에게 순결은 생명보다 중요하다' 는 가르침은 계속될 것이고 여성의 생명은 남성보다 경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호주제를 아시나요???

생활속의 호주제 피해사례



"아내강간죄는 없나요???"

문 저는 30대 여성으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들 앞에서는 아주 신사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집에만 오면 완전히 독재자가 됩니다. 시집에는 매일 문안전화를 하라고 시키고, 시가 친척들에게는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참석해야 하지만, 친정에는 명절에도 안 가고, 친정에 경조사가 있으면 시비꺼리를 만들어 싸우고서 기분이 나쁘다며 가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자기 기분이 나면 내 기분이나 건강 상태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로 강간하다시피 하면서 내가 원할 때에는 "어떻게 점잖은 가정주부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행동은 술집 여자나 하는 것" 이라면서 모욕을 줍니다. 특히 남편은 싸우고 나서 강제로 부부관계를 하고, 부부관계를 했으니 화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치욕감은 죽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남자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아내를 강간하는 남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지요?

답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7조).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1항).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인 친족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아내의 의사를 무시하고 남편이 성관계를 강제로 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에도 일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식과 법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남편의 이런 사고방식은 가산과 가족(아내와 자식)은 가장 또는 호주에게 속한다는 가부장제적 사고방식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이런 봉건의식을 민주 헌법정신에 의해서 하루빨리 불식시켜야 할 우리 민법이 아직도 호주제도를 명문화해서 간접 지원해 주고 있어 문제입니다.
부부가 존중하고 평등하게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모두가 지향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호주제도가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하겠습니다.

생활속의 호주제 피해사례

"결혼해도 여자 성 계속 쓰는 건 여성을 존중???"

문 저는 여성신문에서 호주제 클리닉 칼럼을 보고 한국의 민주헌법이 남녀차별 조문을 명문화 해 인습적으로 내려오는 차별을 간접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고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호주제도가 폐지되어야 하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폐지운동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법을 잘 아는 변호사 또는 법학자들 특히 남자들이 이 운동에 앞장서 주신다면 효과적이겠다 생각되어 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오신 몇 분에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미국에서도 여자는 혼인하면 자기의 성을 버리고 남자의 성을 사용하게 법으로 되어 있다, 또 남편 대부분이 자기가 받은 월급봉투를 통채로 자기 부인에게 가져다주고 부인에게서 용돈을 타서 쓰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이 두가지만 보더라도 여자들을 존중해 주고 있다는 게 증명되지 않는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답

미국에서는 혼인하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처녀적에 사용하던 성(姓)을 버리고 남편 성(姓)을 따라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부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계속해서 혼인 후도 자기 성을 사용하고 싶으면 우리 나라처럼 부부가 각자 원래의 성을 사용하고 남편이 자기의 성을 버리고 아내의 성을 따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은 신용사회라 신용도가 더 높은 사람의 성을 실리에 따라서 선택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제규정이냐 선택규정이냐가 특재냐 민주주의냐 또는 남녀차별사상을 계속 이념적으로 존치시키는 규정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나라는 그 남자분 말씀대로 혼인 후도 여자에게 원래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계혈통주의를 존중·강화하는 이념에서 타 부계혈통인 여자를 자기의 혈통의 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상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지, 결코 여자를 존중하기 위해서 성을 그대로 사용하게 한 것은 아님이 명백합니다.

또 대부분의 남자들이 월급을 봉투째 부인에게 맡기는 나라는 우리 나라뿐일 것이다,하는 말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 총각 때보다 월급을 두 배 받는 것도 아닌데 부인에게 봉투를 다 맡기고도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고 몇 년 지나면 자기 명의의 집 한채가 생기는 곳도 우리 나라뿐입니다. 월급 한 푼 안받고 남편의 재산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나라 아내들입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혼인한 후 모은 재산은 부부공유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어 혼인 후 남편이 벌어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남편 고유의 재산으로 아내는 그 재산에 대해서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 중에 남편이 부인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집을 팔거나 보증담보로 제공했을 경우 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부인은 단지 관리권자일 뿐이고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91년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민법에서는 이혼할 경우에만 혼인 후 그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권을 인정해 줄 뿐입니다. 이런 모든 법적 규정이 집안의 주인은 호주이므로 사람이든 재산이든 주인에게 속한다는 이념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성도 부부가 협의해서 선택하고 재산도 혼인 후 함께 모은 재산은 부부공유로 하도록 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유 2

누가 호주제를 아시나요???

외국의 호적제도에 관해 궁금했던 두세가지 이야기들

어때? 이제까지 이야기들 재미있게 읽었어? 설마 아직도 호주제가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뭐? 뭐라고? 그래도 호주제가 없어지면 가족제도가 붕괴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아이고~ 이 사람아~ 걱정도 팔자구먼. 호주제가 없으면 가족제도가 붕괴라니. 혹시 호주제=가족제도 라는 논리를 머리속에 끼워놓고 사는거 아냐?

이런 당신의 논리가 얼마나 비약이며 기우에 불과한지 내가 다른 나라의 호적제도(물론 다른 나라의 신분제도를 호적제도라고 부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편의상 호적제도라고 말할테니까 염두해두길 바래) 이야기를 해줄게. 내 이야기들을 통해 니가 우리나라 호적제도와 다른 나라 호적제도의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 좀 더 욕심내자면 이런 논의들을 통해 니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차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겠는데 말이야. 그러니 눈 크게 뜨고 내 이야기에 귀기울여봐. 알았지??

자, 어디부터 가볼까? 해외로 배낭여행 가봤어? 만약에 배낭여행을 떠난다면 어디부터 가보고 싶어? 난 유럽부터 가볼래. 왜? 폼나잖아. 그럼 호적제도 이야기도 유럽부터 시작해볼까.

유럽호적제도는 말이지. 교회부라는게 있대. 아마도 유럽만의 독특한 전통에 기인해서 만들어진 거겠지? 그 교회부에서 호적제도가 유래한 거래. **사람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사망하기까지 각 사건별로 호적을 편제한다는 거지.** 우리나라의 제도랑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눈치챘어?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을 한 용지에다가 다 적어놔서 그 종이쪼가리 하나만 일람하면 서울의 김씨가 언제 태어나고 부모가 누구고 형제는 몇이고 언제 누구랑 결혼해서 자식은 몇이나 낳았으며 언제 죽었는지가 좔좔좔~ 다 나와있는 우리나라의 방식이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지. 게다가 유럽의 호적제도는 개인별로 하나씩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김씨의 동생은 누구고 손위는 누구인지와 같은 친족관계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구.

그럼 개인의 신분변동을 일람하여 파악하기가 어려워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물론 그런 결점이 있지. 근데 그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다는 거야. 주목할 사실은 말이지. 영미쪽에서는 철저하게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택해서 각 호적부간의 연결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이건 깍두기로 말해주는 건데 말이지. 유럽이나 영미의 호적제도는 호적이 혈통, 가족형태, 가족에 대한 이념이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니? 몰랐지? 몰랐지? 내가 위에서 교회부 이야기 잠깐 했었던거 기억해? 유럽이나 영미의 호적제도는 사실 애초에 교회신자를 파악하거나 헌금을 추산하기 위해서, 혹은 국교를 위해 타종파를 탄압하는 수단이나 종교탄압을 이용한 중앙집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 등을 배경으로 생겨났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 하나!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에 가족생활에서 여성차별문제 따위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

고등학교때 제2외국어 배웠어? 어느 나라 말 배웠니? 난 독일어를 배웠거든. 지금 기억나는건 이히 리베 디히! 이거밖에 없지만 말이야. 나 그댈 사랑해! 그러니 앞으로의 내 이야기도 역시 귀기울여 주길 바래. 알았

지?

독일에서는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서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이라는 각 사건별로 호적부를 작성한대. 이건 위에서 유럽의 대체적인 호적제도에 대해 말할 때 나왔던 내용이지? 특이한건 말이야. 개인의 이러한 사항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이러한 호적부간을 연결하는 난외부기방식을 쓴다는거야. 또 가족부라는 장부가 있는데 부부와 미혼자녀의 신분사항을 기록하여 가족관계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이제 프랑스로 가볼까?

프랑스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호적부를 편제한다고 해. 프랑스는 호적제도로 신분증서제도라는걸 두고 있는데 출생증서, 혼인증서, 사망증서, 인지증서 등 다양한 증서들을 작성하거든. 그럼 이러한 증서에 기록한 사항을 어떻게 일람하여 파악하냐고? 프랑스 역시 난외부기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그러니까 출생증서에 다른 증서사항을 난외에다가 대부분 적어둬서 출생증서의 일람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한거지. 그럼 가족관계는 어떻게 파악하냐고? 가족대장이란게 있거든. 이 가족대장을 각 가정에 발급해서 보관토록 하고 있어.

독일과 프랑스의 호적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겠니? 그리고 우리나라의 호적제도와 뭐가 다른지 눈치챌 수 있었어? 유럽제도, 즉 프랑스 1804년법과 독일 1875년법에서는 다양한 신분기록은 동일인에게 통일적으로 실시되지 않았었다고 해. 또한 각 사항을 발생한 지역에서 기록되고 그 기록간에는 아무런 연결도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여성차별이나 그 밖의 다른 차별 문제가 생길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지. 나중에 프랑스 신민법에서 난외부기방법을 채택함으로 각 지역에 산재하는 기록부간에 연결을 시도했던 거고.

또 독일 신분법은 말이지. 신분기록을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인단위뿐 아니라 가족단위로 편제했다는 거 알아? 단, 주의할 점!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호적법상의 '가'와는 전혀 다른 거라구.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성립하거든. 유럽에서 우리 호적과 같은 '가'를 단위로 하는 가족제도가 없었으니까 가족개념이 다른 건 당연하겠지? 사실 우리의 가족제도는 일본에서 특유해 이식된 거긴 하지만 말야.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되려나? 예컨대 결혼식 장면을 생각해봐. 기독교문화가 지배적인 유럽에서 혼례를 올린다면 목사가 주례사에서 질문을 하겠지? 신부 누구는 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하겠는가 라고 말야. 만약에 일본이라면 어떨까. 일본 신도혼례에서는 신주가 누구家와 누구家가 인연을 맺음을 선언한다 라고 말하겠지. 일본에서 기인한 호적제도를 빌어 사용하는 우리나라 역시 이런 개념이겠지.

유럽제도, 즉 프랑스 1804년법과 독일 1875년법에서는 다양한 신분기록은 동일인에게 통일적으로 실시되지 않았었다고 해. 또한 각 사항을 발생한 지역에서 기록되고 그 기록간에는 아무런 연결도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여성차별이나 그 밖의 다른 차별 문제가 생길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지.

물론 유럽중세에서도 귀족가계나 가족묘지 등은 있었어. 그치만 기독교는 적어도 이념으로서는 세례, 매장, 혼인 같은 사건을 당사자 개인사항으로 생각했다는 거지. 그러니 세례나 매장, 혼인은 처음부터 가족개념에 구속받지 않았던 것라구. 그러니 기독교가 지배적이었던 만큼 개인별 사건을 기록한 교회부가 생겨났던 거고. 그러니 후대에 들어 국가가 교회부 기능을 인수할 때도 우리나라 호적제도나 일본의 구호적제도와 같이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표현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호적은 성립할 수 없었던 거지.

뭔가 가슴이 찌릿찌릿하지 않니? 이런 유럽 호적제도에서 여성차별이 적어진다는 점은 당연히!당연히! 배울점이지. 그뿐아니라 이 유럽제도가 호적으로 인한 여성차별외의 다른 차별까지도 최소화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제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떤게 있냐고?? 특히, 비적출자와 양자의 이익을 보고하기 위해서 독일과 프랑스 모두 그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야. 어때? 정말 우리나라에서 배울점인거 같지 않니? 구체적으로 독일신분법은 입양사실을 출생부, 가족부에 분명히 기록은 하지만 법률상 당연히 그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가족부에서 부모란에 양부, 양모라고 표시하지도 않는다는 점, 부모로서 양부모를 기록하는 출생증서와 친부모를 기록하는 혈통증서라는 두 종류 출생증명서를 마련한다는 점 등 입양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비밀을 지켜준다는 거지.

또한 재판상 이름을 바꾼 사람이라든지 다른 성별에 속해야 할 사람이었던 이에게는 그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그 공개를

누가 호주제를 아시나요???

호적에 대한 다른쪽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여성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을 제거한다는 점에 비중을 둔다면 영미제도 만한 제도가 없지.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 제도도 영미식으로 무조건 바꾸자는 말은 아니야. 우리 현실에 맞추어 차별을 제거하면서 우리에게 적합한 방안을 구상하는게 바람직한 거란 거지.

더욱 제한하여 본인과 관청에게만 그 열람을 허용토록 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군가가 적출자라면 그게 일반적출자인지 준정적출자인지, 양자인지 구별을 명시하는 것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는 건 정말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여겨져.

이러한 공개제한뿐만 아니라, 개인 신분증서를 공증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차별을 막기 위해 필요이상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지 않아도 좋도록 허용하고 있고 말야. 정말 감동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냐? 우리나라처럼 호적부와 주민등록부가 있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일이 끝날때도 있지만 호적등본이나 초본까지 제출 할 것을 요구받는 일이 많은 나라에 비하면 말이지. 이런 독일제도를 통해 호적기록사항 증명이나 호적등본, 초본교부나 그 이용방법 등을 제발! 재검토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야.

주목해야 할 시선! 또 한가지!! 유럽에서 국민들의 신분기록부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보조적 조처들을 살펴보자구. 독일에서는 4종류의 신분기록부가 있다고 말했었지? 그런데 그중에서 **출생, 혼인, 사망이라는 개별사건에는 각각 그 발생한 장소에서 기록하고, 보관하는데 비해 가족부는 이사에 따라 함께 이전한다**고 해.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 가족부는 부부주소지의 관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겠지? 우리나라 호적도 '본적'이라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와 관계없는 곳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주민등록처럼 거주이사에 따라 함께 이전할 수 있다면 편리할 텐데 말이지. 그렇다면 적어도 본적지 추적으로 인한 지방차별의식 따위는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어?? 동의하지?? 프랑스에서도 국민이 행정상 서비스를 받을 때나 본인이라는 증명수단으로서 신분증서를 제시해야 할 때, 필요한 신분증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의 관청으로 가서 신청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관하기 쉬운 신분증명수단으로서 가족대장과 신분카드를 발급한다고 해. 가족대장, 신분카드를 그 본인이 보관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때 호적 등초본을 청구하기 위해 그 호적보관관청을 방문해야 하고 또한 호적관청에서 해야 하는 업무처리를 생각한다면 이 역시 감동적인 제도가 아닐까 싶어. 그리고 뭣보다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신분등록제도와 관련 문제는 국가권력과 개인 내지는 가족관계라는 거야. 신분등록제도는 민사적인 증명수단이라는 점 말고 국가가 개인 내지 가족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거지. 특히 이러한 제도의 성립시기에는 더더욱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유럽에서는 교회부의 성립이 강한 절대주의국가 권력의 배경 하였음은 이미 말했었고. 프랑스에서 그 호적제도의 불편함을 오래전부터 논의했음에도 불구, 지금까지도 민법규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사건별편제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전통에 대한 존중이라는 이유도 있을거라 생각해. 그치만 무엇보다 개인 내지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간섭을 배척하는 자유에 대한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겠지. 이에 견주어 독일신분법이 정밀한 가족부제도를 채용한 것은 유대인탄압이라는 목적은 별개로 하더라도, 국가가 개인 내지 가족을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필요로 한다는 이유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호적제도는 유럽호적제도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많은 정보량을 갖고 있지. 그러니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 쉬운 제도라는 거지. 따라서 국가간섭과 추적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국민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 주요사항만을 기록하고 그 공개를 제한하는 유럽의 이러한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여겨지는데, 그대도 그렇지??

그럼, 미국은 또 어때?

이제 미국이야기를 할게. 미국은 철저한 사건별 기록제도를 가지고 있어. 출생, 혼인, 사망에 따라 각각 증명서를 작성하거든. 그리고 이러한 증명서간에는 연결이 없다는 거야. 이혼은 법원에서 하고, 그 기록도 법원에서 보관하고. 유럽이 사건별 편제방법을 보충하여 난외부기방법이나 가족부, 가족대장제도를 채용하는데 반해서 영미쪽은 철저하게 이러한 연결제도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거지.

따라서 어떤 사람의 신분변동을 일람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 그러니 호적을 통해서는 여성차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차별도 생겨나지 않아. 영미에서는 이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생활을 멀쩡하게 영위해 나가고 있지.

이러한 제도는 인구동태통계자료로서 이용하는데 편리할 뿐아니라 증서작성이나 그 보관을 정형화 하기 쉬워.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유리하고. 즉, 자신의 출생, 혼인, 친자관계등을 증명하고 싶을 때는 스스로 필요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거든. 제3자가 어떤 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일이 생기면 본인에게 추심하여 증명을 요구하면 되는거고. 본인의 양해없이는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그러니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어떤 차별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지. 개인정보를 그 개인이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제도인거 같아. 호적에 대한 다른쪽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여성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을 제거한다는 점에 비중을 둔다면 영미제도 만한 제도가 없지.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 제도도 영미식으로 무조건 바꾸자는 말은 아니야. 우리 현실에 맞추어 차별을 제거하면서 우리에게 적합한 방안을 구상하는게 바람직한 거란 거지.

이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으로 가보자구!!

이제 아시아쪽으로 눈을 돌려볼까. 일본! 그래 일본부터 둘러보자구!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호적제도는 사실 일본의 구호적에서 비롯된거야. 일본의 구호적은 우리나라와 같았지만 일본이 전쟁후 민법을 개정하면서 지금은 전혀 다른 제도가 되어 버렸지만 말야. 민법개정에서 일본은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와 가족'이라는 장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대. 가족이라는 용어도 민법적 속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했고. 이러한 호주제도와 家제도의 폐지로 호적도 폐지된거지. 그리고 새로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했어. 구체적으로 혼인이

마지막으로 중국이야기만 하고 마칠께. 중국은 원래부터 독자적인 호적제도를 유지해 왔어.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병탄되기전에 중국영향을 받아 시행하고 있었던 호구조사식인 호적제도가 기술적으로



란 절차를 통해 부부는 하나의 성(씨:氏)을 정하도록 하는 부부동성제도를 사용하고 있대. 그리고 이 성을 호적의 편제기준으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칭하는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되는 거지. 그리고 혼인한 모든 자녀는 새로 호적을 만들어(3대호적금지) 새로운 호적을 창설하게 되는거고.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새로운 호적제도에는 문제점이 없느냐고? 왜 없겠어. 당연히 있지. 이러한 일본호적은 부부동성제도를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90%이상의 여성이 남편의 성을 칭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질적 여성차별문제나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표시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차별문제, 또 가족집단이 한 용지에 일람하여 기록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차별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를 개선할 개인별 호적제도(1일1호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대.

발달한 거지. 이 제도는 우리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쉬워. 즉, 중국은 호구등기기관과 혼인등기기관이 따로 있거든. 호구등기기관에서는 호구부를 작성해서 가구주와 그 가구원의 출생, 사망, 전입, 전출사항을 기록하는 거고. 혼인이나 이혼은 혼인등기기관에다가 신고하여 혼인증이나 이혼증을 발급받는 거지. 당사자가 이 발급받은 증서를 호구등기기관에 제출하면 호구등기기관은 이 사실을 호구부의 혼인상황란에다가 표시하는 거지. 주목할게 있는데 말야. 중국의 호적제도에서는 부부는 동적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녀는 원칙적으로 모(母)의 호구부에 기록되고. 신기하지? 이러한 중국의 호적제도는 거주이전의 제한과 관련이 많은거 같아.

자, 지금까지 이야기들 잘 들었어? 이제까지 독일과 프랑스를 표방한 유럽과 미국, 아시아의 일본과 중국의 호적제도에 대해 살펴봤어. 나 정말 니가 우리나라 호적제도를 당연시 하지 말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길 바래. 전통입네 어

쩌네 하면서 이제까지 그래왔었으니까 왜 바꾸냐 라는 식으로 건성으로 지나치지 말고 이 나라의 헌법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에 반한다는 걸 눈치채주길 바래.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자유2

독일에서는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서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이라는 각 사건별로 호적부를 작성한대.

프랑스는 호적제도로 신분증서제도라는 걸 두고 있는데 출생증서, 혼인증서, 사망증서, 인지증서 등 다양한 증서들을 작성하거든.

미국은 철저한 사건별 기록제도를 가지고 있어. 출생, 혼인, 사망에 따라 각각 증명서를 작성하거든.

일본은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구체적으로 혼인이란 절차를 통해 부부는 하나의 성(씨:氏)을 정하도록 하는 부부동성제도를 사용하고 있대. 그러니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칭하는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되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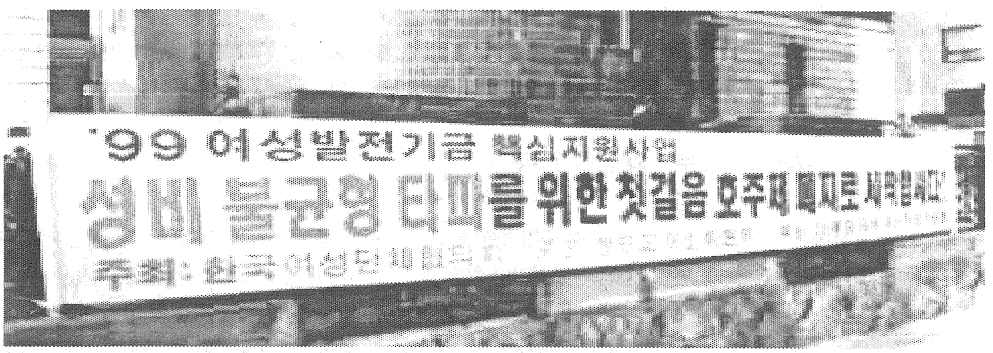
중국은 호구등기기관과 혼인등기기관이 따로 있거든. 호구등기기관에서는 호구부를 작성해서 가구주와 그 가구원의 출생, 사망, 전입, 전출사항을 기록하는 거고. 혼인이나 이혼은 혼인등기기관에다가 신고하여 혼인증이나 이혼증을 발급받는 거지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호주제에 대한 정의와 문제점, 피해사례,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 나라의 호주제가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제도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호주제를 폐지한다면 어떠한 제도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며,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다. 여기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안을 알아보자.

참고로, 여성계와 학계에서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의 전달과 객관적 판단을 위해, 한국여성개발원의 장영아 연구원의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와 지난 7월에 법무부 주최로 있었던 "호주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김상용(부산대 법학과 교수)님의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라는 발제문에서 발췌했음을 밝힌다.

그 대안은 무엇인가?! 호주제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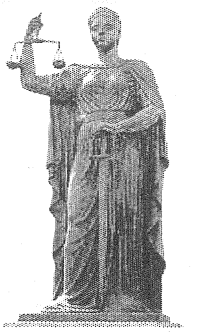


헌법의 양성평등이념에 위반하는 우리 나라 호적제도는 호주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은 호주제 도를 폐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호적의 존재가 우리 나라에서 호주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고찰한 외국호적제도를 참고하고, 우리 나라 현재 호적제도의 장점을 살린 호적 제도 개선안으로서 기본가족별호적, 1인 1호적,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주민등록 제도로 일원화한 호적의 3가지 호적제도 개선안을 제기하기로 한다.

이러한 호적은 사건별 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신분변동을 한 용지에 기록하는 인적편제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선방안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호적의 편제원리, 호적양식과 기록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 본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고, 여기에서는 그 요점만 을 간추린다.

누가 호주제를 아시나요???



기본가족별 호적은 부부를 단위로,
부부동적원리,
친자동적원리에 따라 편제한다.

가. 기본가족별 호적

호주제도를 폐지하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호적방안이다. 기본가족별 호적은 부부를 단위로, 부부동적원리, 친자동적원리에 따라 편제한다. 편제한 호적은 등재한 자 모두를 제적하기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의 친족공동생활체가 동일한 호적을 가지고 싶다고 하는 국민감정에 순응하는 것이다. 또한, 적어도 호적은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녀는 부모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일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에 적합한 호적방안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차별은 없지만, 가족별로 편제하기 때문에, 가족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이혼가족이나 사실혼 가족 등에 대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의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1) 부부는 동적 한다.

혼인으로 부부호적을 편제한다. 호적을 편제할 때, 부부 둘 다 색인자로서 기록한다. 남편이나 아내를 기준으로 하면,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협의로 정하는 방법은 남편으로 정할 우려가 있으며, 협의 할 수 없을 때는 그 해결책이 없어, 사실혼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혼인이 무효일 때는 전 호적으로 복적한다. 그러나,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혼인하거나 재혼하는 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새 호적을 편제하고, 남은 배우자는 그 호적을 지속한다. 남은 배우자도, 재혼할 때는 그 배우자와 새 호적을 편제한다. 호적에 등재한 자를, 모두 제적하기가지 그 호적을 유지하는 것이다.

(2) 미혼자녀는 그 부모와 동적 한다.

미혼자녀는 출생으로 그 부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기혼자녀는 그 배우자와 함께 새 호적을 편제한다. 양자는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미혼자녀로서 미성년자녀 는 친권자인 부나 모의 호적에, 성년자녀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호적을 선택한다. 법원에서 친권자를 부모 둘 다로 정한 경우에는 자녀의 호적문제를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한다. 자녀는 부나 모가 재혼하기 전까지 는 부모호적에 입적하고, 부나 모가 재혼하는 경우에 친권자인 부나 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이 때, 그 친권자인 부나 모의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부평등뿐 아니라 미성년자녀의 이익, 보호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혼자녀의 자녀는 모의 호적, 즉 모가 기록되어 있는 모의 부모인 조부모의 호적 에 입적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가족별 호적의 예외로서 3대호적이 발생한다. 이상에서, 자녀는 그 부모와 동적 하지만, 부모의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자녀는 부나 모중 하나가 친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친권자주의에 따라 친권자의 호적에 입적하지만, 친권자가 부부공동일 경우에는 부와 모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돼 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정하도록 한다. 그밖에, 성년자녀는 의사주의에 따라 부나 모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새 호적을 편제한다.

나. 1인1호적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호적을 편제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여성차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호적에 자신만이 책임지므로, 가족중심에서 개인단위사회로 진행중인 우리 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개인별 호적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이나 그들의 호적등록지를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친족일람이라는 우리호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다.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현재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로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국민기록제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호적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주민등록표 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주민등록표'를 수정, 보완한다. 이 방안은 주민등록제도상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앞의 1인 1호적방안을 합하여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장영아 연구원 글 중-

호주제도의 존치론자들은 호주제도의 폐지가 호적사무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즉 현재의 호적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호적을찾는데에도 호주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현행 호적사무에 큰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편제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호주제도 폐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호주제도의 폐지가 무리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호주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계혈통주의와 여성차별의식의 기반을 제거하는 효과를 노리면서, 호적제도의 면에서는 현행 골격을 크게 수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가족별호적편제제도를 유지하면서 대안제시

여기서는 현재의 가족별 호적편제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한 대안에 대하여 서술한다. 가족별 호적편제제도는 가족간의 친족관계를 일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적어도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현실의 가족공동체는 하나의 호적에 기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다(이제까지의 호적제도에 익숙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하나의 호적에 기재되지 않고, 개인별로 각자의 호적을 갖는 개인별 카드제도는 낯설게 느껴질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가족별 호적편제제도하에서는 한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하나의 호적부에 기재되므로, 결과적으로 개인의 사생활(개인정보)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호주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새로운 호적의 편제단위는 부부와 그 자녀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는 현실의 가족생활공동체에도 부합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누구나 혼인을 하거나 혼인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하면(혼인외의 자의 경우) 반드시 하나의 새로운 호적이 편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3세대 호적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호적편제방식에서는 부부가 혼인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게 되므로(즉 혼인신고에 의하여 부부가 함께 새로운 호적에 편제된다), 혼인하게 되면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현행법의 방식은 더 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이 부부가 혼인신고와 동시에 공동으로 신호적을 편제하고, 각자의 혼인전 호적으로부터 새로운 호적으로 이적하는 경우, 새로운 호적을 특정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방식에 의하면 호적은 본적과 호주의 성명에 의해서 검색되는데, 호주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부부가 혼인과 동시에 공동으로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도, 본적을 기재하여 호적을 특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현재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신호적의 본적지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부부가 협의하여 신호적의 본적지를 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부공동으로 호적을 특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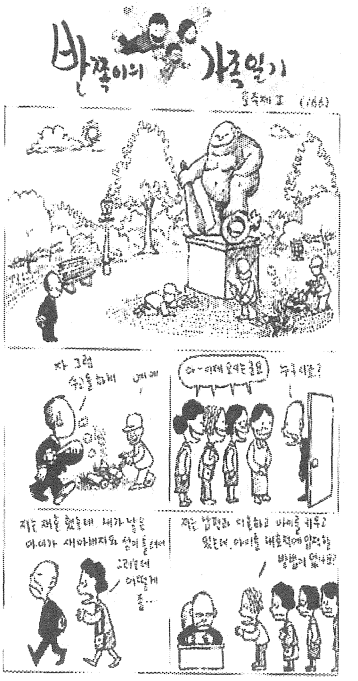
그러나 호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호주 대신 호적을 특정할 수 있는 검색용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부부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여 호적을 특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부의 성명을 기재하는 순서는 가나다 순에 의하면 될 것이다. 이 방식을 택할 경우 호적을 특정하기 위하여 호적이나 신고서마다 부부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므로 번거롭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가 혼인과 동시에 공동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방식에서는 부부가 호적의 중심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부부의 성명을 모두 호적의 특정을 위한 검색용어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도, 예를 들어 미혼모와 혼인외의 자가 하나의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 등에는 한 사람(즉 부모의 일방)의 성명만으로도 호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호적의 특정을 위하여 기재되는 성명은 다른 한편으로는 호적편제의 기준이 되므로 그 사람을 '기준인'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호적과 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서 호적의 '기준인'이라는 기재란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외에도 부부가 혼인할 때 협의하여 '기준인'을 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해결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추첨을 하는 방식 또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부부를 공동으로 기준인으로 하는 방식 등). 현재의 전산화 수준과 앞으로의 발달 전망을 고려해 보면, 굳이 '기준인'을 한사람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호적이나 신고서 마다 두사람의 이름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현재의 방식에 비하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우리 사회에서 호주제도의 폐지가 의미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 상징성 – 남자에 의한 가문승계의 철폐와 양성평등의 실현 – 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정도의 수고는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호주제 폐지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의 호적정리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호적이 정리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서술한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생존배우자는 혼인으로 인하여 편제된 호적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될 것이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을 통하여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의 호적을 분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과 같은 호적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이 경우에는 이혼 또는 혼인 취소 후 친권자로 된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혼인호적에 그대로 남고 다른 일방은 이적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 명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각각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자녀의 분리양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과 그 친권에 따르는 자녀가 동적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혼 후에도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남게 된다면(실제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를 같은 호적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호적은 가능한 한 현실의 생활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혼 후 자녀도 친권자(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는 일치할 것이다)의 호적에 편제되는 것이 현실과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호적(父家)에 입적하게 되어, 이혼후에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호적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혼 후 자녀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친권자의 호적에 동적하는 것으로 하면, 호주제도가 낳은 부모의 차별을 바로잡고 호적이 현실생활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혼의 경우에도 초혼과 마찬가지로 부부는 새로운 호적을 편제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재혼한 부부에게 자녀(전혼중의 자녀 또는 혼인외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친권자와 자녀가 동적하는 원칙에 의하여 일원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자녀의 호적에 대하여

자녀의 호적에 대하여 서술한다.

부모와 자녀는 현실적으로 가족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하나의 호적에 편제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현실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또는 자녀가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경우 등에는 부모가 각각 다른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느 호적에 자녀가 편제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자녀가 친권자의 호적에
입적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 경우에는 자녀가 친권자의 호적에 입적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혼의 경우는 물론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도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친권자와 같은 호적에 있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의 혈족 아닌 자녀를 부부공동의 호적(혼인으로 인하여 개설된 신호적)에 입적시키는 경우에도(현행법상의 가봉자 입적) 남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며, 자녀의 친권자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어머니와 혼인 외의 자는 동적하게 된다. 자녀가 성년자가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스스로 호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하나의 호적에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혼시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가족법 개정안에 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이혼후의 친권자를 정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친권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친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 형제자매가 각각 다른 호적에 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자녀의 분리양육은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불가피한 사정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별 호적 편제방식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전산화 수준을 감안해 보면 형제자매가 부모의 이혼후 서로 다른 호적에 편제된다고 하여도 전후의 호적을 연결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별 어려움없이 형제자매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친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편제방식에 따르면 양자는 당연히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대안을 따르는 경우 기존의 호주는 기준인으로 보면 될 것이다. 법정추정호주승계인으로서 혼인하였는데도 분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적시켜서 부부를 중심으로 새롭게 호적을 편제하여야 할 것이다. 새롭게 혼인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게 될 것이다.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추상적인 '가'를 기본단위로 하여 편제되는 현행 호적은 실제의 가족생활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 결과 주민등록제도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원래 안보목적으로 도입된 주민등록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넘어 일반행정, 민간거래는 물론 호적제도의 기본 기능인 신분관계 확인을 위한 공부로도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주민등록제도가 호적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호적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현행 호주제와 호적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의 비정상적인의 팽창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정보유출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주민등록표에 의해서 관리되는 개인정보는 140개 항목에 달하며, 이 가운데 78개 항목은 국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이처럼 방대한 정보를 보유·관리한다는 것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가를 중심으로 편제하는 현행 호적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부를 중심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방식을 따르게 되면, 현실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이 같은 호적에 기재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제도의 필요성이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호적이 주소등록제도를 겸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가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자유 2

– 김상용 교수의 글 중–



이번에는 호주제 존속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껍니다.
우리의 입장이 호주제 폐지이긴 하지만 안티호주제를 외치는 우리가 호주제를 존속하자는 그들의 입장을 파악해야지만 반박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호주제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이재필 한국씨족총연합회 사무총장의 글을 조목조목 따져 가며 제 생각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부계혈통 지키려면 호주제 필요하다.

이재필
한국씨족총연합회 사무총장

■ 호주제도가 없다는 나라들의 '모래알식' 가족제도는 가족윤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혼율이 급등하고 가정이 파괴되어 사회적으로는 폭력천국의 어두운 그림자를 야기시킨다. 호주란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을 제도화한 것이며 호주제 존폐 시비는 가족공동체 폐지 주장과 같아 논쟁의 여지가 없다.

안티호주제

– 이혼율증가와 가정파괴, 폭력의 만연을 지나치게 가족제도에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계혈통사회를 착실하게 따르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어디 가정파괴와 폭력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호주제 폐지=가족공동체 폐지라는 주장도 상당히 억지십니다 그려. 이거 아니면 끝장이다 라고 여기는 흑백논리로 문제제기조차 못하게 하여 문제를 은폐시키고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시키시려는 노력, 정말 눈물겹습니다.

이재필
한국씨족총연합회 사무총장

안티호주제

■ 지난 97년 7월에 헌법재판소가 미풍양속으로 지켜져 온 동성동본 금혼법이 남녀 평등권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했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동성동본 금혼법을 아예 폐지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한국씨족총연합회와 성균관 등의 강렬한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3월 11일 찬반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가족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했다. 그러나 매스컴이 동성동본금혼법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다는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국민들은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없어지고 8촌 이내의 근친혼 금지법으로 전환 개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남녀 평등이념을 자극하여 호주제도 폐지를 공론화하려고 자극적인 선동 문구를 여과 없이 나열한다는 사실이다. 호주제도가 없다는 나라들의 '모래알식' 가족제도는 가족윤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혼율이 급등하고 가정이 파괴되어 사회적으로는 폭력천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구미각국에서 실증됐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물론 호주제도 폐지가 가정파괴의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라지만 호주제도 때문에 남아선호사상, 여아선별 낙태살해, 남녀 성비 불평등이 조장되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은 비윤리적으로 파생되는 어두운 면을 마치 가정의 보편적인 일상기능처럼 호도하는 억지다. 가족제도란 관습과 전통문화가 가장 많이 응축되어 있는 고유 제도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시각으로 보는 남녀평등 논리와는 또 다른 문제가 수반된다. 기본적으로 호주제를 포함한 가족제도는 여권운동 대상일 수 없다.

–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모래알 식' 가족제도란 것이 어떤 것인지요. 가족윤리라는건 또 뭡니까. 단지 부계중심의 혈통이 유지되고 여성은 숨도 쉬지 말고 대를 이을 아들만 낳아주면 유지되는게 가족윤리요 가족제도인 겁니까.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부모가 동등하고 화목하게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대로된 가족윤리요 가족제도인 것이지 힘을 가진 부와 힘이 없는 모가 만나 일방적인 모의 희생을 토대로 겉보기에 조용한 집안이 진정 화목한 집안인 걸까요. 제가 보기엔 이런 동등하지 못한 가정내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되길 강요받는 가족제도가 실은 '모래알 식' 가족제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요소를 안고있는 불안한 가족제도인 것 같습니다요.

– 관습과 전통문화요? 혹시 인습은 아니었는지요? 도대체 호주제도가 언제부터 정착된 제도라고 확신하시고 관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고 주장하시는 건지요. 일제가 식민지수탈을 빌미로 정착시킨 제도도 아름다운 미풍양속인가요? 설령 전통문화라고 칩시다. 단지 전통문화라는 이유만으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마치 가정의 보편적인 일상기능처럼 호도하는 억지'라고 진정 억지를 부리실 겁니까. 문제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리면 문제가 없어진답니까. 물론 잠깐동안은 마음은 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하더라도 그 전통으로 인해 현실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면 그건 인습일 뿐이요 뜯어고쳐야 할 악습일 뿐입니다.

이재필
한국씨족총연합회 사무총장

■ 호주란 가정의 대표인 가장을 말한다. 가정의 운영을 위해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이 있어야 하고 그 가장을 제도화한 것이 호주제도다. 때문에 호주제 존폐의 시비는 곧 가족공동체 존폐주장과 같다. 때문에 호주제는 폐지나 존속의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

■ 호주제도가 부계혈통 문화권에서는 부계중심으로 승계된다. 때문에 남녀평등에 반하고 남아선호사상을 야기하며 여아만 차별적으로 낙태살해함으로 연간 3만명의 여아가 죽어가고 결과적으로 남녀성비 불균형이 심화되어 인간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는 종족 번식을 위한 성비균형이 자연의 섭리로 유지된다. 잘못된 행위는 견제되는 것이 문화인데 비화된 불량계수를 엉뚱하게 제도개혁으로 합리화하려는 생각은 잘못이다.

■ 호주제는 왜 부계로 승계되는가

인류의 문명사가 태초에는 모계사회로 시작되었다고 하나 혈통의 연속성이 부계에 합리성이 주어진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되어온 증거가 인류가 공통적으로 부계혈통 문화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계혈통 문화를 가진 씨족사회의 가족제도는 부계혈통이 대일통으로 정착된 부계중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족을 대표하는 호주가 부계로 승계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 남녀간의 평등은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공통된 문화로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사회생활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남녀평등 논리는 당연하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원천적으로 다른 신체구조에 따른 역할이 평등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산술 개념의 평등과는 다르다. 사회에서 남녀간의 능력에 차이가 있을 뿐 역할의 한계는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부간의 극복할 수 없는 역할의 한계는 부부일체의 조화로 평등을 이룬다. 이때 남자는 외적을 방어하고 먹이를 구하는 호주의 역할이 부여되고 여자는 생산하고 경영하고 기르는 신성한 역할이 부여된다.

– 가정의 운영을 위해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이 있어야 한다면 그게 왜 하필 남성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단순히 호주가 가족을 대표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호주가 필연적으로 남성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 상당히 폭력적인 언급이시군요 그려. 인위적인 제도로 인해 여아만 차별적으로 낙태살해된다는 사실이 성비균형을 위한 자연의 섭리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겁니까. 제대로 사고가 박힌 사람이 할 소립니까.

– 자연스럽다고요? 도대체 자연스럽다는 의미가 뭡니까. 한쪽 성이 다른 한 쪽 성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게 진정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까. 단지 성기의 유무로 인해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우월하다는 논리는 정말 과격 그 자체입니다.

– 성차이와 성차별에 대해 혼란을 느끼시는 것 같군요. 물론 남성와 여성이라는 신체적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체적 차이로 인해 불평등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체적인 차이일 뿐이지 우월함과 열등함을 나타내는 기준은 아니니까요. 남녀간의 평등이 진정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공통된 문화이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있으니 남녀평등 논리가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째서 호주제에 대해서는 여성은 당연히 입닥치고 남성에게 복종해라라는 논리를 피력하시는 걸까요. 진정 조화와 평등이 이루어 질려면 가정에서부터 여성과 남성,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동등해야 할겁니다.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바로 여성과 남성이 가정내에서도 평등하길 바라는 목소리인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호주제폐지를 이야기 하면서 호적제도에 관해
알지못한다면 말이 안되겠죠?
다음은 호적제도에 관한 법률 상식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퍼 왔습니다.

호적제도에 관한 법률 상식

● 호적이란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서 누구나 수수료만 내면 호적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 호적사무 처리기관

호적사무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장인 대사, 공사, 영사가 처리하며 법원에서 감독한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본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인 **가(家) 단위로 편제**되고, 본적지 지번순서에 따라 보존하고 있다.

● 호주와 호주승계

가(家)의 기준이 되는 지위가 호주로 종래에는 집안의 직계비속 장남자로 가계가 이어져 직계장남자는 분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직계장남자라 할지라도 원한다면 그 가(家)를 떠날 수 있고, 호주 승계권도 포기할 수 있다.**

● 입적과 제적

호주의 가(家)에 가족(家族)으로 들어가는 것이 입적이고, 말소되는 것이 제적이다. 입적의 사유로는 출생, 혼인, 입양, 인지 등이 있고 제적의 사유로는 사망, 이혼, 분가, 호주승 계, 국적상실 등이 있다.

● 제적과 제적부

장남아닌 남자가 혼인하면 분가하여 스스로 호주가 되면서 독립한 호적을 갖는다. 또 여자가 혼인하면 남자의 호적에 입적이 되고,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을 비롯한 호주승계인이 그 순서에 따라 호주승계를 하게 된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원래의 호적에서 모두 말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적이다. 호주승계가 되거나 호주가 사망하였는데 후손이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일 호적내에 있던 전원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그 호적은 제적부로 편철되어 따로 보존하고 있으므로 먼 조상의 신분관계를 알고 싶으면 제적부를 보아야 한다.

● 신 고

입적과 제적은 신고에 의하여 하게 된다. 신고는 신고사건의 당해 **본인의 본적지나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해야 한다. 다만 태아인지신고는 인지자의 본적지에서만 가능하다. 또 출생과 사망의 신고는 당해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이외에 각 출생지, 사망지에

서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도 있다. 또한 호주승계 신고는 피승계인의 본적지에서도 할 수 있고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경우에는 동에도 할 수 있다. 신고방식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양식이 있으며 신고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류도 다양하므로 담당공무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신고서를 우편으로 송부해도 된다.

사망신고나 출생신고 등은 보통 이미 발생된 일을 국가기관에 알려서 호적이란 장부를 정리하게 한다. 이럴때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호적관청의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허위신고의 경우 그 신고가 호적부에 기재를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입양신고, 인지신고, 복적신고, 입적신고, 일가창립신고, 전적신고, 분가신고 등은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법률적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혼인은 신고를 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결혼식을 한다고 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도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판사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 호적관계의 몇가지 법률상식

① 사생아(혼인외의 자)의 호적취득:

혼인중에 출생한 아이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아버지의 호적 에 입적된다. 그러나 사생아는 아버지가 인지신고나 출생신고를 아니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도 없을 때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창립을 하게된다. 이때에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단 아버지의 성명을 호적부에 기재할 수는 없다.

② 동성동본간의 혼인: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금혼조항(민법 제809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동성동본인 혈족간에도 혼인할 수 있다. 다만 동성동본인 남녀가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또는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에는 그 혼인이 무효가 되므로, 무효혼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로서 호적 또는 재적등본, 족보사본,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인 성년자 1인이 작성한 확인서 또는 그 외의 성년자 2인 이상이 연서한 확인서 중 하나의 서면을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친생자의 인지:

사생아는 아버지가 스스로 자기 아들임을 인지하여 신고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이 된다. 그러나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재판청구를 하

여 인지를 받을 수가 있다.

④ 무적자의 혼인신고:

본적(호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무적자가 된다. 무적자도 혼인신고나 이혼신고는 할 수가 있고, 신고로 혼인이나 이혼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만 호적이 없기 때문에 특종신고 서류편철장에 그 신고서를 편철해 두었다가 나중에 무적자가 취적 등으로 호적을 갖게 된 후에 본적신고에 의하여 기재를 하게 된다.

⑤ 개명과 호적정정:

호적정정은 호적의 기재내용이 착오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를 때 이를 고쳐 사실과 같게 맞추는 것이다. 본적지의 동이름이 틀렸다든지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으나 보다 중요한 사항은 법원에 호적정정허가를 신청하여 정정결정을 받거나 또는 판결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착오로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정정의 절차에 의하여 이름을 바로 고칠 수가 있다. 그러나 본래의 이름을 바꾸는 개명의 경우에는 본적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여 허가가 되면 신고를 하여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

⑥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자의 입적:

대한민국 여자가 외국 남자와의 혼인 중 1998. 6. 13. 이후에 출생한 자식은, 그 출생한 당시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부(父)의 국적을 취득할 뿐만아니라 모(母)의 국적도 취득하게 되므로 모 또는 기타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부나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부를 표시하여야 함)로써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것이고, 그 출생자는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로써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 또는 이탈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양자의 상속권: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의 재산을 모두 상속할 권리가 있다.

⑧ 귀화 외국인의 성과 본:

외국인이 귀화하거나 혼인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쓸 수 있으나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의 성과 본을 쓸 수도 있다.

⑨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

혼인중에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⑩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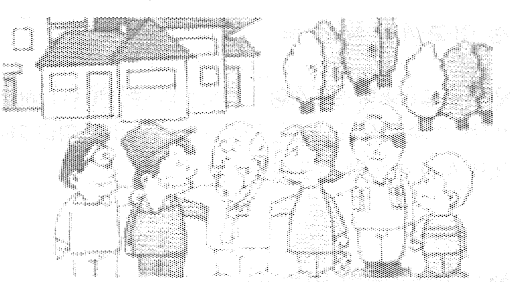
출생자의 이름은 한글이나 한자로 지을 수 있되 5자이내로 지어야만 신고가 가능하며, 한자로 지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한 인명용한자(총 2,964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⑪ 호적(제적)등 · 초본 발급제도:

국민은 누구나 그 호적(제적)이 보관되어 있는 시(구) · 읍 · 면에 가서 그 발급신청을 하면 호적(제적)등 ·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또한 모사전송 방법에 의하여 전국 어디서나 본적지 호적(제적)등 ·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⑫ 외국인과의 혼인 · 입양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과 혼인을 하거나, 외국인을 입양하여 국내에서 한국법에 따라 시(구) · 읍 · 면사무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른 혼인(입양)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본국의 관할관청 등으로 부터 발급받아 번역문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자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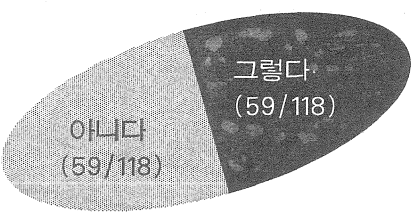
경대인들은 과연 호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난 8월22일부터 24일까지 도서관 신관 입구에 자보를 이용한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조사방식이 과학적이지 않아 이것이 경대생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지만 일부나마 호주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했다는데 조사의 의의를 둡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신 학우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回 경대인들은 호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누가 "호주제도"를 아시나요?

1. 우리나라의 호주제도는 일제가 식민통치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강제이식한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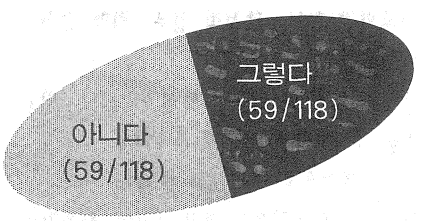
그렇다 (59/118) 아니다(59/118)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일제는 국가를 하나의 큰 가족으로 보고 천왕을 국가라는 가족의 가장으로 상정해 한 집안의 가장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듯 천왕에 대해서도 똑같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일본 무사계급내의 상속제도인 가독상속제(적장자가 가산과 호주권을 결정적으로 상속하는 제도)를 호주제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이식했습니다.

2. 부계혈통에 의한 가계승계(적장자의 제사 상속)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보편적으로 행해진 우리의 전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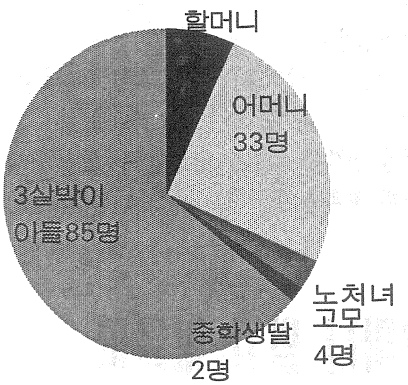
그렇다 (22/126) 아니다(104/126)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조선왕조는 경국대전에 적장자에 의한 가계승계 확립을 도모하나, 현재와 같은 현재와 같은 부계혈통 중심의 가계 승계가 확립된 것은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입니다.
18C전까지 남자는 처가살이 하는 것이 보통이였고, 제사는 자녀들이 돌아가며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할아버지, 할머니, 노처녀 고모, 어머니, 딸(중2), 아들 (3살)로 구성되는 가족에서 (아버지 사망) 할아버지 (호주)가 사망하면 누가 호주 승계를 하게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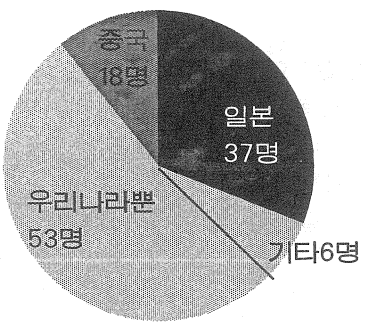
할머니 (9/133) 어머니 (33/133) 노처녀 고모 (4/133)
중학생 딸 (2/133) 3살박이 아들(85/133)



정답은 3살박이 아들, 즉 호주의 손자입니다.
민법 제 984조에 의하면 호주승계의 순위는 1.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이 직계비속 여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입니다. 다시 말해 호주의 아들이나 손자, 혼인하지 않은 딸, 처, 어머니, 며느리의 순이 됩니다.

4. 우리나라와 같은 호주제도가 있는 나라는?

일본 (37/114) 중국 (18/114) 우리나라 뿐이다 (53/114) 기타 (6/114)



정답은 '우리나라 뿐이다 '입니다. 우리나라에 호주제를 도입했던 일본은 지난 1947년 가제도를 없애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주제를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에 호주제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5. 호주제는 우리나라의 전통이므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부계혈통만을 중시하는 양성불평등한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존속되어야 한다 (52/168) 폐지되어야 한다(98/168) 잘 모르겠다 (18/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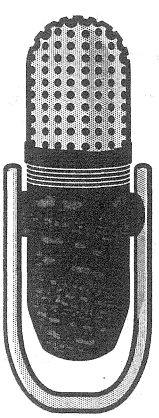
기타의견으로 호주제가 부계혈통만을 중시하는 불평등한 제도이긴 하나, 행정적 업무처리에 있어 모계혈통으로 하는것보다 더 편리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말은 부계혈통이 아닌 모계혈통으로 가자는 말이 아니란 걸 아실것입니다. 따라서 모계혈통으로 호적을 편성하는 것이 행정적 업무 불편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호주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여러가지 의견 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기본 가족별 호적을 쓰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서는 부부 등적의 원리가 적용되어 부부의 이름이 모두 색인자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호적을 편람할 때도 부부 어느성으로 찾든지 간에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 역시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가져올 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부계혈통 중심의 호주 편제가 가지고 온 양성불평등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수고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nterview

호주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 - 인터뷰

내게 질문을 해 봐 1탄

다음은
그룹 인터뷰의 내용이다.
인터뷰의 대상은
세 명으로
98학번의 여학생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그네들이 가명을
요청하였기에
내 맘대로 이름을
붙여본다.



산적(질문자, 이하 생략) : 호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칼잡이 : 호주제는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딸만 있는 집은 도대체 어떡하라고. 하긴 딸도 호주승계가 가능하긴 하데요. 아들은 죽고 손자는 있는 집에서 딸이 신청해서 호주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를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딱 한번뿐이래요.

협객 : 그건 낡은 제도이고 시대 모순적인 제도예요. 저 그거에 대해 할 말 많은데요. 호주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구시대적 발상이에요. 기득권 층의 남성들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 할 수 있죠.

사무라이 : 저는 호주제로 인해 여자도 피해를 받지만 남자도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일종의 책임감 아니면 부담감 같은 거를 많이 느낀다고 봐요.

산적 : 여러분들은 모두 호주제 폐지 쪽에 서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호주제 폐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곧 폐지되리라 보십니까?

칼잡이 : 남아 선호사상, 임신중절, 낙태 등의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호주제는 마땅히 폐지될 것이라고 봐요. 뭐, 쉽진 않겠지만 꼭 없어져야죠.

협객 : 당장에 없어지지는 않아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사무라이 : 저도 폐지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도는 없어질지 몰라도 사람들의 인식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머리 속 깊이 뿌리 박힌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려울 거예요. 아직도 친족간의 입양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큰집에서 작은 집에 있는 아들을 입양해 가는 거죠.

칼잡이 : 그래요. 의외로 그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딸만 있는 가정은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요. 우리 친척들을 봐도 대를 이을 아들을 낳으려고 난리에요.

협객 : 제 주변에는 그런 집이 없어서 지금도 그렇게 심각한 수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산적 : 지금까지의 얘기에서 호주제의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언급이 되기는 하였는데요.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칼잡이 : 무엇보다 낙태가 가장 심각하죠.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애기를 가져요. 그러다가 초음파 검사로 딸이다 싶으면 지우고 아들이면 낳는 거죠. 초음파 검사로는 아들이었는데 낳아보면 딸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 고모는 내리 딸만 다섯을 낳았는데요. 그 쪽 시어머니가 아직도 포기를 안 하고 손자를 재촉한데요. 안 그래도 우리 고모 몸이 약한데 불쌍해서 정말 못 보겠어요.

협객 : 호주제는 가부장적 체제를 유

지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거죠. 장자를 중시하고 여성의 비중을 낮게 만들죠. 전통적 가치관이 남아 있어서 호주제도 남아 있는 건데요. 호주제의 직접적 피해는 느끼지 않지만요, 그 제도의 존재 자체가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루 빨리 없어져야 되요. 호주제가 없으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쉬워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딸의 출생에 기뻐하고 또 그 딸은 축복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이라고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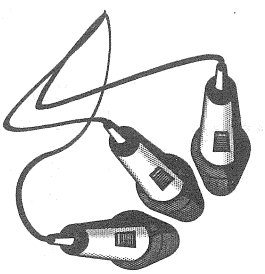
산적 :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 되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칼잡이 : 법적 해결이랑 인식 문제요. 호주제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면 폐지도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아마 호주제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을 걸요. 남자들과의 의견조정이 필요할 거예요. 학교 안에서는 호주제에 대해 좀 듣는 편이지만 밖에서는 호주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걸요. 인식이 아직 많이 덜 되었어요.

사무라이 :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요. 여성 비하적인 의식이 많은데 남녀 평등 사상을 일찍부터 익히게 해야죠. 성교육도 여자애들만 시키지 말고 같이 시켜야 되요. 그래도 무엇보다 가장 급한 건 법적 해결이죠. 호주제 문제는 지난번에 잠깐 이슈화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관심이 별로 없어진 거 같아요. 지속적인 관심과 운동이 필요해요.

협객 :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든 면에서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사회 시스템상 호주제 폐지가 호락호락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보수적인 대중매체도 그렇고요. 저도 법적인 해결이 시급하다고 봐요. 또 여성계의 적극적인 활동도 있어야 되고요. 인식의 변화도 여성계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 여성계에게 모든 부담을 지어 주는 거 같아 좀 그런데요. 하여간에 여성계가 이 문제를 더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좀 더 얘기 해 보면 아마 다를 거예요. 서서히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거라도 봐요.

특별히 호주제에 관심 있겠다 싶은 사람들만을 골라 인터뷰한 것은 아님을 확실히 일러둔다. 위의 세 사람은 우연히 나의 가시영역 안에 포착된 사람들로서 이들이 어떤 대답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그들이 어떤 대답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마치 기다렸단 듯이 호주제에 대한 의견들을 마구 쏟아 부어 적잖이 본인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특히 호주제로 인해 빚어진 주변의 피해사례들을 많이 주고받으며 호주제 철폐로의 공감대를 쉽게 형성하였다. 그러나 그네들의 바쁜 스케줄로 보다 깊이 있는 인터뷰가 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interview

내게 질문을 해 봐 2탄

호주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로 결심했다. 다른 사람들은 호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인터뷰대상은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리라 마음먹었고 유심히 길가는 사람들을 탐색했다. 그리고 드디어 인터뷰대상 결정들다!!

인터뷰대상: 김상태(남, 전전부'96)

(앞으로의 '나'와 '그'로 진행되는 대화는 나름대로 편집, 보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뷰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오니 문체가 작위적이라 하여 시비 걸지는 마십시오.)

나: 선배 나 선배한테 할 말 있어요.

그: (뭔가 미심쩍은 눈빛으로)무슨 말 할라고?

나: 선배는 호주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그: 호주제? 아 니가 전에 말한 거 말이가. 근데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나: 그냥 전문적인 호주제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해주면 되요.

그: 그라지뭐.

나: 그러면 다시 시작할께요. 호주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어.

나: 그러면 선배는 호주제가 어떤 제도라고 생각하세요?

그: 가부장제의 잔유물이다.

나: (내심 감탄하며) 오호- 의외로 열린 가슴으로 대답해주시는군요. 그러면 호주제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의외로 흔쾌히) 그거? 필요없다. 그런 거 없어도 잘산다. 단지 없으면 족보 따먹기 할때 좀 아쉽지 싶다.

나: (그의 반응에 기뻐하며) 그 말은 호주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그: (조금 뜸들이다가) 그건 좀 다른데. 내 같은 경우는 호주제를 폐지해도 그다지 상관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존속해도 내한테 손해될 건 없으니까 존속해도 상관없거든.

나: 왜요? 무슨 뜻인데?

그: 호주제란 제도가 지금 내한테 절실하게 와 닿는 제도도 아니고. 또 내 입장으로서는 그게(호주제) 있든 없든 그다지 영향력이 없다는 거지.

나: 그러면 선배는 호주제가 지니는 비효율성과 불평등성에 대해 관심은 없는 거고?

그: 내한테는 딱히 불평등적일 건 없으니까. 누가 호주제를 폐지하자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테지만 같이 동참할 생각은 없다는 거지. 내한테는 그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손해될 건 없으니까.

나: 만약에 나중에 선배가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 근데 그 부인되는 사람이 자기가 이 집의 호주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할건데?

그: 가보고 하라카지머.

나: 호주가 여자가 되도 괜찮다는 입장?

그: 누가하든 상관없는 거 아이가. 만약에 내 아내 되는 사람이 호주하고 싶다 카면 가가 호주가 된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

나: 만약에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어머니랑 노처녀고모랑 중2 딸내미랑 3살 짜리 아들네미가 사는 집이 있어. 근데 할아버지가 호주야.

그: 아버지는 어디 갔는데?

나: 아버지는 사망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호주잖아.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쳐. 그러면 그담 호주는 누가 되게요?

그: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할머니.

나: 땡! 틀렸어요.

그: 할머니 아니가? 그럼 어머니인가??

나: 둘다 아님. 3살 짜리 아들이 그 다음 호주가 되요.

그: 그런 게 어딨노. 웃긴다.

나: 맞죠? 그죠?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그렇네. 문제긴 문제네.

일단 나는 그에게 호주제가 분명 문제 있는 제도임을 피력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고 그 역시 그 문제점을 인식하는데 성공했다. 갑자기 밀려드는 이 뿌듯함이여. 그에게 좀더 고난도의 인터뷰 단계로 진행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나: 이거는 딴 이야기인데. 부모성 함께 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함께 쓰라케라.

나: (의외의 반응에 또 한번 놀라며) 성씨에 대해 애착같은게 없나봐?

그: 그런 거 필요 없다. 성씨 같은 것도 없어져야 된다.

나: (감탄만 하고있음)오호-

그: 그냥 내보고 김상태라 카지 말고 상태라 캐라. 성씨 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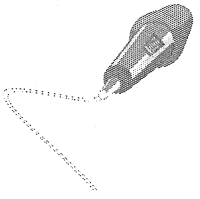
자유2

그와 나의 대화는 여기에서 단절되었다. 그와 내가 지니는 공감대의 부족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인부한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는 자리를 떠야만 했다. 생각보다 표본추출을 성공적으로 했던 건지 우리의 인터뷰 대상이었던 '그'는 호주제에 대해 중립적인? 혹은 방관적인 듯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씨족협회 회원들 마냥 굳건히 '사수!호주제'를 외치는 부류는 아니었던 터라 정력낭비하며 논쟁을 할 필요는 없었다.

interview

호주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 - 인터뷰

내게 질문을 해 봐 2탄



여학우들의 생각보다 남학우들의 생각이 더 궁금했다. 왜냐면 여성으로 자리매김된 종족의 입장에서는 호주제란 제도는 분명 불합리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호주제는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 내가 그 제도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 아래서 숨을 할딱거릴 뿐인, 참으로 비참한 입장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제도 위에 서있는 남성들의 생각이 궁금했다.

인터뷰를 좀더 확장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또다시 인터뷰대상을 탐색!! 역시 내맘대로

무작위 표본추출에 의한 선별임을 다시 한번 언급함.

이번 인터뷰 대상: 임대섭 (남, 무역'93)

나: 선배 지금 바빠요??

그: 왜, 할말 있나? 설문조사 할라고?

나: 아니 설문조사는 아니고. 뭐 좀 물어볼라고. 잠깐만 시간 내줘요.

그: 그래 이야기해봐라.

나: 여학생위원회에서 이번에 자유지를 발행하는데 주제를 호주제에 관한 걸로 잡았거든요. 호주제에 대한 선배의 생각이 궁금해서요.

그: 너네의 입장은 뭔데?

나: 호주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폐지하자는 거죠. 근데 인터뷰는 그냥 선배생각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관점으로 진행되길 바래요. 선배는 남성 중심으로 호주가 되는 현재의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난 당연히 남자가 가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남자가 호주 혹은 가장이 된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여성을 억압하거나 다른 혜택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진 않아.

호주라는 호칭, 혹은 가장이라는 불림이 그렇잖아. 한국사회의 남자들이라면 언젠가 결혼해서 가장이 되거나 호주가 된다는데 책임의식 같은걸 가진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남자가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한 보편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다. 그렇지만 내가 가장이 된다고 호주가 된다고 해서 여성을 억압하거나 차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나: 그렇다면 선배는 호주제가 지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호주제란 제도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어느 한쪽 성에게 불평등적이고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면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거겠지. 그렇지만 단지 편의상 존재하는 제도라면 어느 한쪽 성에게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는다면 굳이 폐지하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을까.

나: 만약에 선배가 결혼을 한다면 누가 호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부인이 호주가 되길 원한다면요?

그: 아내가 호주가 되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같거든. 남자가 호주가 되야 한다고 여기는 것도 어떤 제도적인 이익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한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좀더 굳건히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 누가 호주가 되든 상관없는 것 같아. 아내가 호주가 되길 원한다면 기꺼이 호주가 되게 할 생각도 있어. 그런 문제로 인해 집안이 시끄러워지길 원하진 않거든. 좀더 중요한 건 가정내의 화목이니까.

나: 그럼 만약에 부인이 호주권에 대해 요구하지 않는다면 선배가 먼저 부인에게 당신이 호주할래? 라고 말할 의향은요?

그: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아내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내 쪽에서 먼저 이야길 꺼낼 이유는

없는 거지. 호주라는 거 누가 하든 그다지 상관은 없잖아. 단지 관념적인 명칭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명칭과 직권을 통해 좀더 가정에 의무감과 책임의식을 느끼고 행동할 수 있게 하니까 말이지.

나: 선배의 말처럼 호주제의 관념적 측면 중에 가정내 책임의식을 이야기한다면 거기에는 동의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뭐 예컨대 어디 가서 딴살림을 차렸다고 해봐요. 어머니랑 아이랑 들이 사는데 남편은 일년가야 집에 한번 얼굴비칠까 말까고 생활비도 한푼도 안보태줘요. 어머니가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와 단둘이 사는 거죠. 그런데도 호주는 아버지로 떡 하니 올라가 있어요. 어머니는 실질적으로 그 가정의 가장임에도 호주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그 점은 문제가 있네. 불합리하네.

나: 이건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어머니랑 노쳐녀고모랑 딸이랑 3살 짜리 어린 아들이 사는 집이 있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의 호주는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다음 호주는 누가 될까?

그: 할머니가 되는 거 아냐.

나: 아니요. 3살 짜리 어린 아들이 호주가 된대요.

그: 그런 면에서 호주제가 작용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하네. 일종의 구시대적 산물인 것 같다. 지금처럼 시대가 변하고 사고가 변하고 그러면 이러한 제도도 변해야 하겠지. 충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현시대에 불합리하다면 바뀌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바뀌어야 하는데 안 바뀌는 건 불평등한 거잖아. 옛날이야 아버지 없이 어린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은 아들에게 전적으로 모든 걸 의지했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의지하고 그랬고 그 당시 사고방식상 호주가 아들이 되는 건 당연시 여겼겠지. 오늘날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여성의 발언권이 많아졌고 예전처럼 아들을 낳아 의존해야 겠다는 사고도 하지 않는데 제도적으로 불평등을 가한다면 분명 잘못된 거지.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인해 차별 받고 불평등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일수 있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인간 중심적 행동이 필요한 거 같아.

나: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선배에게 호주제 폐지에 관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서명할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어떠하시겠어요?

그: 전후설명없이 그냥 서명을 요구한다면 거부감이 먼저 들겠지.

나: 그럼 지금과 같은 이야기가 진행된 후라면요?

그: 지금이라면 얼마든지 서명할 수 있지. 그 제도의 문제로 인해 한쪽이 불평등하다면 말야.

자유2



그와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짓겠다. 상당히 많은, 그리고 의미있는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대충 추려서 여기까지만 기록한다. 왜냐고? 그거야 편집하는 내 마음이지.

@위 인터뷰는 1단과 2단의 설문자가 다른 사람임을 밝히며, 인터뷰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M이다



안녕? 내 이름은 "M"이야. 나이는 스물하나. 하지만 이건 내가 세상에 태어나 정상적인 가정생활, 학교생활을 했을때 얘기고 사실 내 몸은 겨우 20주 밖에 안된 태아란다. 그래, 너희도 이미 짐작했겠지만, 난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차가운 메스에 갈갈이 찢겨 그 해 쓰레기장에 버려진 3만명 여자태아 중 한명이야.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도 잘 몰라. 부모님의 사랑을 채 느껴 보기도 전에 난 엄마 뱃속을 떠나야 했으니까. 하지만 우리 엄마가 날 버릴 때 얼마나 괴로워 하셨는지는 알고 있지...

내가 사는 이곳은 말야, 나처럼 '응애~' 소리 한번 못 질러보고 이 곳으로 온 친구들이 꽤 있어. 그 중에서도 한국아이가 두번째로 많지. 한번은 우리들끼리 모여서 왜 우리가 이 곳으로 와야만 했을까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 부모가 자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 곳으로 온 친구들이 가장 많았구, 다른 형제들과 더불을 조절한다고 온 애들도 있고,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 온 친구들도 있구, 자기가 여자아이기 때문에 온 친구들도 있구... 이유가 가지각색이더라.

엄마들아라고 우릴 뱃속에서 끄집어 내는 게 좋았겠어? 낙태를 하면 출산하는 이상의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아는데 말야. 하지만 그 이유라는걸 좀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낙태가 가능한 경우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될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야. 근데도 우리나라 낙태의 80% 이상은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어. 바로 위와 같은 이유들로 말야.

정상적(자연적)인 출생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0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 지난 10년간 (86~95년) 남아 출생률이 113에 이른다는 통계치가 말하는게 뭘까? 그 많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기 위해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희생되었다는 거지 뭐겠어? 우리나라의 그 잘난 남아선호사상때문에 말야. 남아선호사상 때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유교적 전통을 중요시하는 대구의 경우 셋째아이 이하의 성비가 100 : 320으로 차이가 거의 3배에 달하고 있어. 이것만 봐도 뻔하지 뭐…

출생성비의 차이는 그 해가 무슨 띠의 해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호랑이띠, 용띠, 말띠 여자애는 기가 세다고 해서 이때는 더더욱 여자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대.

이것 뿐만이 아냐.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아에 잉태를 할 때부터 인위적으로 남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셀나스 임신요법이란게 그런 거야. 셀나스 임신요법의 한국 보급 대행사인 '이오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1300여명의 90%가 아들을 원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남아선호사상이 가히 환상적인 수준이란걸 말해주는거지.

이렇게 기형적인 출산이 계속되다 보면 그 결말은 비참하단걸 왜 사람들은 모르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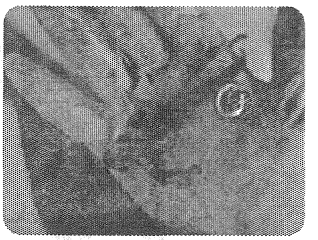
2010년쯤이면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자들의 5명당 1명은 배우자를 찾기가 힘들꺼야. 지금 당장은 아들이 생겨 좋겠지만 그 아들이 커서 결혼도 못하고 내내 집에서 빈둥대기만 한다면 어지간히 속이 편하겠다…

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나라의 여자는 "세번 죽어야 사는 여자"가 아닐까…(꼭 무슨 영화 제목 같군…)

아들을 낳기 위해서 선택임신법이다, 민간요법이다 해서 첫번째 죽음을 당하고, 엄마 뱃속에서 여자아이라는게 밝혀지면 낙태라는 이름으로 또 사라지고, 두번의 고비를 거쳐 세상으로 겨우 나왔다 치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당해야 하는 각종 불평등과 차별로 세번째 죽음으로 내몰리니 말야…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의식도 많이 높아지고,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세상에 태어났더라면 여성임을 당당하

낙태 여아



게 여기며 불의에 저항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겨.

참 끝내기 전에, 내가 왜 "M" 인지 궁금하지 않았어? 사실 난 이름이 없어. 아무도 내게 이름같은거 불러준 적도 지어준 적도 없으니까… 근데 몇 년 전인가 "M"이란 드라마에서 나처럼 낙태당한 여자아이의 영혼을 "M"이라고 부르더라고? 여기 있는 우리들은 사실 그렇게 처음부터 나쁜 맘먹는 애들은 없어. 간혹 너무 억울해서 그렇게 장난을 치곤 하지만…그 드라마 이후로 여기있는 여자애들을 그냥 "M"이라 불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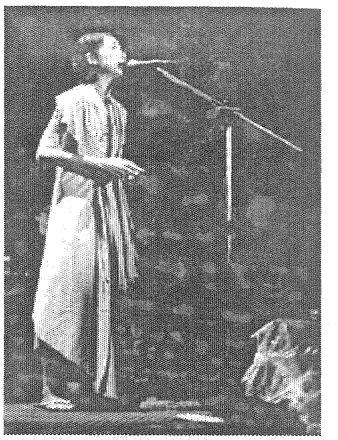
남자아이를 얻기 위해 아무 문제없는 여자애를 낙태하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안녕



자유 2

이 공연하게 단단하게??

『여악여락 - 페스티벌』



여기 여성 뮤지션과 관객을 주체로 놀아보는 페스티벌이 5월 27일 5시부터 10시까지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연세대 총여학생회와 여악여락 추진본부의 힘으로 드디어 열렸다.

이제 여성 뮤지션들과 여성 관객들은 거부한다. 자신들을 더 이상 꼭두각시로 취급되는 것을..

여성을 주체로 세우고자 하는 페미니즘 문화예술 행사는 이미 여러 가지 경로로 시행되어 왔고, 대중 음악도 부수적으로나마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공연은 '뮤지션과 음악이 주체가 되는 공연'이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여악여락은 대중 음악에서의 여성성과 여성 뮤지션의 위치 그 자체에 대해 돌아보는 공연으로 기획되어 왔다.

97년 이후 미국에서 40만 명의 관객들과 100여 명의 주류, 인디를 총망라하는 여성 뮤지션들이참여하는 여성들의 축제 '릴리쓰 페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관람하고 돌아온 '여악 여락' 추진본부 여성 기획자들은 한국의 모든 여성 뮤지션들을 다 물망에 올렸고, 한영애, 이상은, 이은미, 타샤니가 메인으로, 그리고, 여성 힙합 댄스팀과 인디 밴드들이 쾌히 참여하였다. 특히 한영애씨는 신중현 트리뷰트 공연등 많은 공연을 구성 기획한 관록으로, 여악여락 공연의 기획에도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었다. 라이브 공연 외에도, 여성 문화에 대한 인터뷰들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페스티벌 중간중간에 방영하였다.

여악여락 홈페이지
(http://www.womyns.com)에는 공연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대중음악에서의 여성성에 대한 비평 작업, 여성 대중음악 연대기 작성, 여성 뮤지션 인명 사전 작성 등의 여성 대중 음악인들의 데이터 베이스로 키워나갈 것이다.

주목하라, 이 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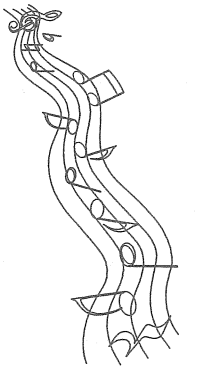
[장필순] 5집 1997

여성 듀오 '소리두울'에서 음악활동을 시작했던 장필순은 정작 자신의 노래보다는 일급 코러스로써 더 알려졌다. 89년 김현철이 프로듀싱한 1집의 "어느새"가 라디오 힛트곡으로 부상하면서 그녀의 진가는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장필순의 초창기 앨범을 관통하던 음악 어법은 이제 마악 주류 음악 언어로 진입하기 시작한 퓨전 재즈였다. 90년대 중반을 훌쩍 넘기고 다가온 5집은 포크에서 시작하여 퓨전의 터널을 통과한 빼어난 여성 보컬리스트가 도달한 지점을 차분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촐한 록밴드 편성에 내면을 응시하는 절제된 보컬, 일상의 건조함을 추적하는 시선은 '어떤날', '시인과 촌장'에서부터 '텔리스파이스', '미선이'로 이어지는 계보의 어느 지점을 비춰주고 있다.

조동익의 영화 음악 앨범과 함께 조동진 사단이 90년대에 안겨준 가장 의미있는 선물로 이앨범을 꼽는데 이의를 제기할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여악여락 홈에서 퍼왔슴다.



아트라라라

제　작 : 여성문화예술기획
기　획 : 이혜경
감　독 : 정경숙
연　출 : 명인서
작　가 : 이숙인
배　우 : 안혜경, 정희영,
김혜림, 김지영,
윤명진 외
공연날짜 :
2000년 7월 6일
– 9월 3일 (서울 공연)
2000년 9월
'과천 마당극 축제'의
'여성 연극제'에서 공연

2000년 9월 –12월
(지방순회공연)
2001년 5월
대학순회공연

자유2

▶줄거리

네명의 여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혜자와 함께 돈을 벌기 위해 지방에 보기 드문 여성전용클럽을 만든다. 이름하여 '레이디 클럽'.

1막까지는 여성전용클럽을 만들기까지 드러나는 네 여자들의 개성, 그들이 주위의 남자들과 함께 벌이는 이야기, 특히 '젠틀맨 하우스'라는 남성클럽에서 살사 댄스를 즐기고 사랑을 찾는 과정이 중심이다.

2막, 여성전용술집이 당국에 의해 호스트바로 몰리고 '레이디 클럽'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하자 네 여자들은 사업 아이디어로서 랩과 힙합의 축제를 기획하고 술집 대신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클럽의 성격을 바꾼다. 아줌마들이 벌이는 랩과 힙합의 축제는 관객몰이에 성공하고 그들은 열심히 갈고 닦은 멋진 솜씨로 관중을 사로잡는다.

뮤지컬 '밥퍼?랩퍼!'는 요즘 여성들의 가장 절실하고도 민감한 주제인 경제적 자립과 인간끼리의 소통을 노래와 춤으로 표현하려 한다. 지금 여자들은 더 이상 하나의 깃발 아래 목청을 돋우지도, 일관되게 무엇을 뒤집으려 하지도 않는다. 욕망은 부글대는데 세상은 여전히 해독하기 힘든 난수표일 때가 많다. 이 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역시 한 마디로 잘라 말하기 어렵다. 어차피 삶은 단순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여자들은 각기 자신들을 나타내는 형형색색의 말과 노래와 춤으로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밥퍼?? 랩퍼!!!』



누가 호주제를 아시나요???

다리가 가늘어 반바지를 못 입으시는 우리 엄마



우리집은 딸만 넷이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초등학교 2 · 3학년 시절의 어느 여름이었나 보다. 우리 집에 큰할버지(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께서 다니러 오셨다. "우리 ○○이 예쁘구나" 하시며 과자 사먹을 돈도 주셨다. 엄마는 음료수와 과일을 내어 큰할버지를 대접하셨다. 할아버지와 엄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고, 이야기 도중 엄마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어렸지만 어렴풋이 엄마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고게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우리 집은 딸만 넷이다.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딸이 많은 이유를 유추하기란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다행(?)이도 나는 맏이라서 부모님과 친척들의 실망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한다. 첫딸은 살림밑천이라니까. 그러나 동생들의 출생은 당연히 달랐다. 엄마는 조바심을 냈고, 주위에서도 실망과 걱정스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자식이 넷이니까 엄마가 낳은, 아니 임신한 것도 네 번이였냐면 그건 아니다. 내가 태어난 그 다음해 엄마는 또 임신을 했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기는 자연유산이 되었다. 엄마 얘기론 그 아기가 아들이었단다(당연히 임신 후 성별감별을 했겠지). 지금도 엄마는 표현하진 않지만 내심 그 아기가 아까운 모양이다. 다음해 엄마는 또 임신을 했고, 지금의 여동생이 태어났다. 두 해 뒤, 셋째 동생이 태어났다. 이 동생들이 그리 축복 받지 못했음은 녀석들의 아무렇게나 지어진 이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내가 초등학교를 들어간 얼마 후, 엄마의 배가 무척이나 부른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엄마가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배가 다시 홀쭉해졌다. 그러나 우리 집엔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알았다. 큰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신 날...

그 당시 우리 집의 형편은 네 명의 아이를 키우기엔 버거웠고, 게다가 그 아이가 딸(!)이였기 때문에 무리해가며 키울 근거를 상실했다. 부모님은 그 아이를 다른 집으로 보낸 것이었다. 친척들의 입소문으로 할아버지가 아시곤 우리 집으로 오신 것이다. 할아버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지 새끼를 어찌 버리냐'며 꾸중을 하셨다. 그러나 난 잘은 몰랐지만 눈물 흘리는 엄마가 불쌍했고, 엄마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로도, 우리에겐 숨겼지만 엄마가 두 번의 낙태를 더 했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그 아이들이 여자였다는 사실도...

지금 막내 동생은 아들을 낳기 위한 부모님의 마지막 시도였나 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부모님은 이 아이가 여자라는 걸 알았지만 엄마의 나이가 많은 것과 몇 번의 중절 수술로 더 이상 낙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세상 구경을 할 수 있었다. 지금은 늦동이로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있지만 태어날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게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꼬.."라며 한마디씩 했다.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든지...

우리 엄마는, 상체는 보통 아줌마들과 같지만 다리는 젓가락 같이 가늘다. 다리가 너무 가늘어 부끄럽다

며 반바지를 못 입으신다. 중절수술과 임신 당시 불충분한 영양상태, 그리고 적절한 산후 조리의 부재로 엄마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이다. 늦둥이를 낳은 달이 되면 여름인데도 엄마는 발목이 시리다며 이불을 찾으신다.

남아 선호 사상! 이 땅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이 이데올로기는 수많은 여아들의 생명을 처참하게 앗아갔다. 통계적으로 우리 나라는 세계 낙태 건수 2위라는 영예(?)에 걸맞게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신생아의 여남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15명(1994년)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남아 선호는 고질병이 되어 버렸다.

낙태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아이가 여아라는 사실 때문인 경우가 많다. 어쩌면 사람들은 아이를 낙태시키는 여자들을 생명의 소중함도 모르는 잔인한 사람이라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여인들에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고, 낙태를 하기까지와 낙태를 한 후에 얼마나 큰 심신(心身)의 고통을 겪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일년에 3만 여명의 여자태아가 부모에 의해 살해당하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상황이 부끄럽게도 바로 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남성중심의 불평등 사회인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남아 선호 사상으로 피해 받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는 비단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는 오빠(남동생)와의 차별이나 여아 낙태, 호주 승계나 재산 상속의 문제와 같은 직접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나아가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분하는 젠더(gender)를 형성시키고, 여성을 남성에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게 된다. 그로 인해 여성은 수많은 차별과 억압 속에서 살아야 하고,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도 발생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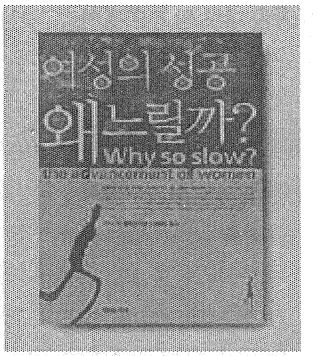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분하고, 여성을 남성에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여 억압하고 차별하는 무식한 몰아부치기 식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성(sexualty)은 그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이 소중한 의미를 가지며, 한 성이 다른 성을 일방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젠더(gender)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섹슈얼리티(sexualty)의 개념으로 성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실천해야 할 것이다.

여자이기 때문에 자식을 중절해야만 했던 수많은 어머니와, 처참하게 죽어가야만 했던 이름조차 없는 여아들의 넋을 위로한다.

섹슈얼리티(sexualty)란

성적인 욕망들, 성적인 정체성 및 성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적인 감정과 성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섹슈얼리티란 사회 구성론적 관점에서 개념화한 것으로 성을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들 내에서 모든 사회 관계들과의 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개념을 말한다.
좀더 쉽게 말해,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구분되는 젠더의 의미를 넘어 성을 바라보는 것이다.

부~욱(BOOK)
찌를까보다



『여성의 성공 왜 느릴까?』

혹자는 물을지 모른다. 아직도 남녀간의 차별이 존재하느냐고.능력만 있으면 여성이라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고. 확실히 1940년대 소위 대리석 천장이었던 것에 비하면 오늘날

여성은 훨씬 깨기도 쉽고 전략을 세우기도쉬운유리 천장아래 살고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 역시 벽임에는 틀림없다. 여성은 여전히 공공연하게 권위있고책임있는 자리에서 배제되었다. 오랫동안 여성들은 막연히 자신들의 실패가 스스로의 노력부족이라고믿어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된미국의 심리학과교수이자 인지과학자인 버지니아 밸리언의 '여성의 성공 왜 느릴까?'에 따르면 그것은 성별차이에 대한 묵시적인가설들,즉성별도식(gender schemas)에 의해 여성은 직업과 안 어울리는 성으로 간주되고, 여성의 성과는 낮게 평가되고, 여성은교육과 경험에 대한 투자로부터 받는 수익률이 남성의 경우보다 낮기 때문이다.

'여성의 성공…'에서 밸리언은 여성의 성공 왜 느릴까? 라는 수수께끼를 푸는 분석틀인 성별도식의 개념을 사용한다. 이는 성과 성별차이에 대한 무의식적인 가설로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기대치와 그들의 업무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고정관념이나 집단 무의식처럼말을 배우기 이전부터 이미 형성되어 일생을 통해서서히 축적된다. 이 성별도식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가장 중대한 결과는 남성은 지속적으로 과대평가되는 반면 여성은 과소평가된다는 점이다. 남성에게는 성별을강조하는 것은무엇이든 이익이 되지만, 여성에게는 손실을 초래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성별도식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부인한다. 학계 뿐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은 평등주의적 신념을 공언한다 . 그러나 고정 관념처럼 의식하지는 않지만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성차에 대한 생각은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국여성의 고위직 진입을 가로막는다. 또한 직업 생활의 시작에서부터 조그만 이익을 꾸준히 축적해야 발전할 수있는데, 여성에게는 이익축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의 직업에 관한 통계적 연구들과 실험실 및 현장에서 실시된 심리학적 연구 결과, 실제 직업세계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차별 철폐 조치가 이루어졌고 여성단체들도 꾸준히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숫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최하위직에 몰려 있고, 처음에는비슷한 연봉과 직급으로 시작했어도 10년 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봉도 더 높고 승진 속도도 훨씬 빠르다. 한마디로 여성의 연봉은 너무 낮고 승진 속도는 너무 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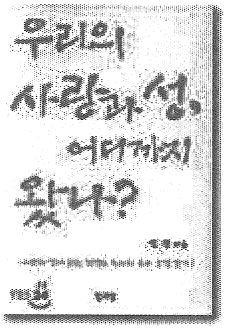
해결책은 무엇일까.

밸리언은 여성의 일에 대한 평가가 좀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이익의 축적을 평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여성 자신들도 적법한 권위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반드시 예외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기가 속한 집단을 근거로 우위를 점하지 않도록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저 자 : 버지니아 밸리언
옮긴이 : 김영신
출판사 : 여성신문사

여성신문에서 퍼왔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성 어디까지 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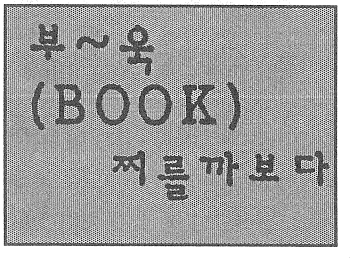


이 시대의 화두인 성. 소설 속에 나타난 사랑과 성에 대한 흔적을 다양한 소재로나눠 게재한 책. 자위와수음, 첫키스와 첫경험, 권태 혹은 결혼의 위기, 또 하나의사랑 혹은 불륜, 성에 관한 은밀한 주제등 다양한 성과 사랑의 표현을 하일지, 마광수, 이경자, 김한길, 장정일, 조성기, 정정희, 양귀자 등 소설 속 밀어를 통해 재확인했다.

저자 : 김진
출판사 : 얼과알

『가족을 위한 가계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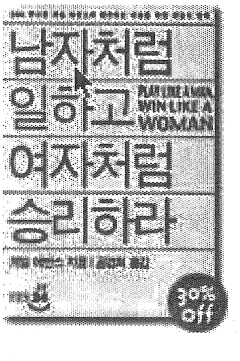
문화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었고, 가족들이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책. 가계도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해 가계도가발전하는 과정, 어디에서 가계도를 시작할것인가, 기본 가계도
의 표식과 상징들, 유용한 삼각관계와 유해한 삼각관계, 집안의 신화 풀어가기 등에 대해 기술했다.

저자 : 에밀리 말린
출판사 : 교문사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승리하라』



CNN부사장 게일 에반스가 제안하는 여성을 위한 게임의 법칙. 성공을 원하는 여성독자들을 사로잡는 책으로 남자가 강자가 군림하는 비즈니스계를게임판으로 축소하고, 그 게임판에서 게임의 규칙을 알아 승리할 것을 피력한다.

저자 : 게일 에반스
출판사 : 해냄출판사

가부장에 도전하는 며느리들...

"길들여지고 싶지 않아!" – '누구'와 '무엇' 때문에 결혼했나



"어, 할아버지 제가 왜 당신 자식이죠?"

시아버지는 까무러칠 듯 놀라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가 자식이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 있으며 그만큼 '아름다운 문화'가 또 어디 있을까. 그러나 이 맏며느리는 두눈을 똑바로 뜨고 말꼬리를 자르며 "당신 자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식된 도리'는 무엇인가

지난 1월 말에 출판된 <나는 제사가 싫다>(이프 펴냄)라는 자전적 체험서는 작가 이하천(51)씨가 30년간 벌인 '시댁과의 전쟁'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며느리와 시부모는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하는 사이"라는 뜻을 전편에 역설한 지은이는 새로운 고부관계를 만들기 위한 전술을 제안한다. "가가호호 처지와 형편에 맞게, 며느리들이 앞장서서 가부장이라는 귀신과 싸우라!"는 것. 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결혼 직후 남편의 유학 길에 동행했다. 남편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시댁 식구들은 나를 몹시 환대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건 '나'를 환대한 게 아니었다. 아들을 뒷바라지 했고 앞으로도 뒷바라지할 '어떤 여자'를, 동시에 시부모를 위해 봉사할 '젊은 여자'를 환영한 것이다. 20, 30대 젊은 며느리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내려 애쓰기 전에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우라고 말이다. 그래야 진정 시어머니와 '친구'가 될 수 있다."

제사문화로 대표되는 가부장적 부계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실은 아주 더디게 움직인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전히 명절노동은 며느리 몫이고, 평소 시댁 식구들에 대한 처신은 며느리의 품성과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격요법이 아니고서는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이하천씨가 '목적의식적'으로 싸워왔다면 다음의 사례는 '순리대로' 싸운 경우다.

길음시장에서 국밥집을 하는 한영애(47)씨. 그는 다섯 자매 중 넷째딸이다. 결혼한 지 10년째 되던 해, 한씨는 명절 때는 친정으로 가서 홀로 사는 친정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지내겠다는 결심을 한다. 한씨는 남편에게 의논하고 시댁 식구들에게는 통보만 했다. '평지풍파'였다.

한씨는 시아버지 제삿날 큰댁에서 시아주버니들, 시삼촌들의 술자리에 합석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친정아버지가 아내와 사별한 뒤 딸들을 어떻게 길러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이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식된 도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말했다. 시댁 어른들은 결국 한씨에게 손을 들었다. 한씨의 선택은 십수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가부장적 위계질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최초로 활자화한 것은 88년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회보에 명절날 며느리의 고충을 그린 글이 실린 것이다. 가사노동자이거나 직장노동자인 며느리들이 명절 때면 이중의 노동에 시달린다는, 지금 시각으로 볼 때는 지극히 '소극적인 어조'의 내용이었다. 어쨌거나 '명절노동'의 실상을 공론화했던 그 '최초의 시도'는 해가 바뀔수록 차츰 몸을 불려나갔다. 덕분에 지금은 '남녀가 함께 일한다' '딸도 조상 모실 수 있다' '시집과 친정을 번갈아 방문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의식의 변화는 교육과 훈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함인희(41) 교수는 "사회는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나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그 흐름을 타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모습, 과도기적 혼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가족 안에서 여성들의 대화가 단절되고, 가족 밖에서는 여성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혼란은 더 복잡하게 얽힌다는 것이다. 결국 가족은 제도적 관계다. 변화할 수 있는 실체인 것이다.

"내 죽거든 네 맘대로 해라"

수원에 사는 이아무개(32 · 번역가)씨는 올 설날에 어떻게 시어머니를 대할지 맘이 편치 않다. 지난해 한가위 때 '돌발 사고'를 친 탓이다.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 명절 때 시댁과 친정을 번갈아 가며 찾겠노라 선언한 것이다. 시어머니는 "내 죽거든 네 맘대로 해라"고 한 뒤 입을 다물어버렸다. 이씨는 시어머니의 완강한 의식에 질리기도 했으나 '전술'이 부족했다는 반성도 든다. 아예 정면승부할 것을 잘못했다는 생각까지 해봤다.

"시어머니를 좋아한다. 하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있다. 서로의 역할과 임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시댁과 며느리의 관계는 가부장적 질서에 따른 철저한 권력 관계다. 예를 들어 명절 때 쌩쌩한 시동생들은 자거나 놀고 나이든 형수들이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도대체 며느리들은 '누구'와 '무엇' 때문에 결혼했을까? 집안의 며느리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런 관습은 '가짜'다. 여기에 길들여지지 않고 싶다. 다른 방법을 시도할 생각이다. 여러 생각이 있지만 우선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고부간의 갈등이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대등한 '권력'을 가졌을 경우다. 예를 들어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고 시어머니는 손주를 키워준다고 치자. 시어머니가 아이 양육비를 포함해 넉넉한 생활비를 며느리로부터 받을 경우, 주고받는 것이 분명할 때에는 갈등이 훨씬 줄어들기도 한다. 이런 '관계'에 비춰보면 우리가 성역처럼 받드는 가족은 결국 '허구적 이데올로기'라 여기는 이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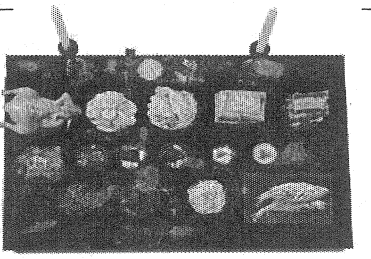
이런 생각을 현실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갈등을 만드는 구조, 즉 혈연 중심의 가족공동체를 넘어선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만든다. 개개인이 '핵'화해 필요에 따라 가족이 되는 '셀프-헬프공동체'(스스로 서고 서로 돕는 공동체)가 대표적인 경우다. 우리 사회에서는 매매춘여성 쉼터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 모자가정 등이 모여 사는 자립자조공동체(일명 자조공동체), 혹은 귀농공동체 등에서 새로운 가족유형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새로운 가족의 가능성

우리 사회 '며느리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우리 사회 '가족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서울 쌍문동 '자립지지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공동육아연구원 김미령(44) 부소장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계 중심의 혈연공동체가 유일한 가족양식은 아니다. 뜻이나 조건이 맞는 이들이 한집에 살 수도 있다. 몸에 익은 습속이 절대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졌으면 한다. 어쩌면 지금의 가족 구조 안에서 대안이 찾아질 수도 있고 가족 구조 밖에서 찾아질 수도 있다. 무엇이 가장 좋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것은 제도라는 건 사람들의 필요와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한겨레21'
2000년 02월 17일 제295호에서
퍼 왔습니다.



그 날 밤 , 그 녀 에 게 무 슨 일 이 있 었 나

오늘은 시댁 할아버님 제사와 친정 어머니 생신이 겹치는 대단한 날이다. 어제 남편이랑 이 문제에 때문에 조금 다퉜다. 아니, 엄청난 혈투를 벌였다. 그 인간은 나를 아주 반체제적인 위험한 인간으로 몰아 세웠다. 나랑 결혼했으니 이제 배씨네 사람인데 왜 자꾸 친정 일에 나서느냐, 호적 파 간 딸을 그 집(?)에서 반겨줄 것 같기나 하냐 등등 가시 돋힌 말들을 나에게 마구 퍼부어 댔다. 조용히 울었다... 나의 주먹이...

어제의 혈투로 인한 후유증으로 나는 오늘 정말이지 심신이가 무척이나 괴롭다. 바로 이것이 화병! 마음 같아선 시댁이고 친정이고 다 그만두고 내 집에서 평안을 찾고 싶지만 애석하게도 나에겐 그만한 베짱이 없다. 별 수 있나. 맵디매운 시댁 식구들의 거침없는 질타를 내 어찌 견디리요. 늦더라도 제사 끝나고 곧장 엄마에게 달려가 보리라 결심한다. 가능성은?

묻지 마라. 나도 모른다.

PM 05: 00

어느 새 시댁 대문 앞이다. 더 늦기 전에 어서 들어가야 함을 알면서 왜 이리도 망설여질까. 아직도 시댁은 나에게 낯설기만 하다. 내가 좀 붙임성이 없는 탓도 있겠지만 그들과 나의 사이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는다. 웃으면서 말을 건네지만 항상 겉도는 느낌이다. 한 식구란 말, 딸 같이 생각하시겠단 말 모두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시댁 식구들과 며느리의 관계란 다 이런 것일까. 세월이 흐르면 좀 달라질까. 모든 것은 내가 하기에 달렸다고 친정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난 자신이 없는걸.

PM 06: 00

배를 깎지도 않은 채 그냥 제기에 놓았다고 또 한소리를 들었다. 어떤 것은 완전히 깎아 놓고 또 어떤 것은 위에 밑에 조금만 잘라 내야하고... 헷갈린다. 이 집안의 모든 전통을 내 몸에 익히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것 같다. 시집온 지 약 5년이 흐른 지금, 이제는 마치 여기에서 평생을 살아온 것 마냥 능청스럽게 대처해야 할 때다. 무언가를 물어본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만 어머님께 여쭈어 해 볼까.

내가 마루에서 이리도 갈등하는 순간에 어여쁜 시누이들은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귤을 아주 천천히 까면서 혹은 땅콩을 천천히 까면서 말이다. 남편을 비롯한 시동생도 방안에서 꼼짝안하긴 마찬가지다. 오호라. 결국 나만 작업전선 최전방에 있는 꼴. 그럼에도, 나 혼자만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 참으로 당당한 모습들이다. 오히려 가끔 나와 내 작업의 결과물들을 이리 저리 뜯어보고는 유유히 사라진다. 한없이 쪼그라든 내 모습을 본다. 이 와중에 사랑방에선 배고프다며 뭐라도 만들어 오라고 재촉하시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삐져 나온다.

PM 08: 00

작은 아버님이 늦게 오신 관계로 조금 기다렸다가 마침내 제사를 지낸다. 남자들은 방에서 여자들은 마루에서 지낸다. 여자는 찬 데 앉으면 안 된다는 말이 불현듯 뇌리를 스친 지금 나의 엉덩이는 차가운 마루바닥에 안착해 있다. 작은 아버님의 한마디에 나는 냉큼 달려가 물 한 그릇을 떠 왔다. 제사를 지낼 때 여자들이 할 일은 방안에 있는 남자들이 절 할 때 따라 절하고, 물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쟁반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하는 정도이다. 제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남자들이다. 하지만 우리들의 일은 아주 민첩하게 그러면서도 조용히 움직여 줘야 할 까다로운 일들이다. 오늘 작은 어머님은 미리 쟁반을 챙기시고는 그 신속하고도 정확한 움직임을 보여 주셨다.

PM 08: 45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뒤. 나는 아버님을 비롯한 여러 남성들을 위해 술상을 준비해야 한다. 제사 때 쓴 술과 안주

가 될 만한 것들을 상에 담아 사랑방에 갖다 드렸다. 마루에서는 여자들이 식사 준비와 각자의 집에 들고 갈 제사음식을 나누느라 바쁘다.

잘 차려진 밥상이 사랑방에 들어갔다. 남자들이 거의 식사를 끝낼 무렵에서야 여자들은 숟가락을 들 수 있었다. 꾸물거리다가 또는 배가 아직 안 고파서 늦게 저녁을 먹어야 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지 않은 채 밥을 비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부름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 몸이다. Yes, sir!

PM 10: 00

상황종료. 이제 시댁 대문을 나선다. 긴장이 스르르 풀리면서 뒷골이 빠근해진다. 오늘은 또 나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나누게 될 것인가. 오른쪽 귀가 사정없이 간지러워진다.

PM 11: 00

잊고 있었다. 어머니 생신. 오로지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곧장 집으로 와 버린 것이다. 늦었지만 전화라도 해 드려야겠다. 딸자식 소용없다는 말, 애지중지 키워봤자 결국 남의 자식된다는 말 모조리 부정하고 싶었는데...

부정 못했지, 현실은 현실이거든. 며느라는 시댁 일에 앞장서고 친정 일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니? 이런 일로 괜히 속썩이지 말고 이제는 받아들여 봐. 언제까지 부정하고 있을 셈이니? 그래 봤자 너만 답답하고 아무도 니 입장을 알아주는 이는 없어. 남편이 언제 니 얘기를 들어 준 적이나 있니? 설마 같은 여자라고 시누이를 어떻게 해 보겠다고 마음먹는 건 아니겠지. 그녀들은 여자이기 이전에 시누이야. 너도 한때는 그네들과 같은 시누이던 때가 있었지. 너는 새언니가 생기길 무척이나 기다렸어. 그 이유는 니가 더 잘 알거야. 그 지긋지긋한 오빠 시중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토록 새언니를 기다렸던 게지. '그녀가 오면 나는 해방이다.' 너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예전의 시누이로서 달라지지 않았어. 친정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지. 시댁식구에 시달리고 남편과 자식에게서 시달려 피곤한 몸을 그 곳에서 달래려고 했지. 남을 원망하기 전에 니 자신부터 어디 잘 다스려 봐.

그리고 니가 이렇게 계속해서 시큰둥하게 나오면 시댁 식구들은 더 살벌해져. 알다시피 니가 가고 나면 그들은 오늘 있었던 너의 행실들을 조목조목 뜯어 가며 비판할 꺼야. 그 비판들의 결과물들은 아마 입에서 입으로 퍼져 나가겠지. 그리고 너는 아마 억세게도 못난 며느리로 찍히겠지. 니가 생각하기에 뭐 그리 잘못한 일이 있었을까 싶겠지만, 오늘 약간은 버릇없게 굴었던 니 남편과 제사 중에 마구 울어대던 니 아들놈 때문에 너 오늘 진창 씹힐꺼다. 아들과 손자의 허물은 곧 못난 며느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하물며 손자가 모기에 물리는 것도 다 며느리 탓 아니겠니. 참 세상살기 어렵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지. 모두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 너만 불쌍한 인생이라고 애통해 할 필요는 없어. 누구는 '며느리가 하녀냐?' '여자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냐?' 라고 부르짖는데 다 소용없는 짓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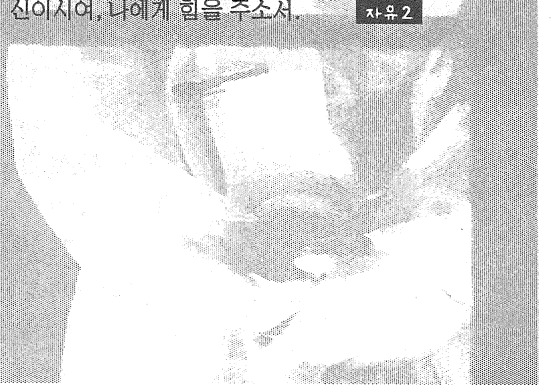
그런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 이 시대의 질서에 너도 따르라고, 감히 세상을 바꾸고자 그들의 사상을 바꾸고자 마음먹지는 말란 말이야. 그냥 입 꾹 다물고 조용히 살아.

AM 12: 00

잠이 안 온다. 그런데 내 심신이가 많이 쇠약해지긴 했나 보다. 이제는 헛소리가 다 들리는 걸 보면. 그냥 입 꾹 다물고 조용히 살라. **조용히... 잠깐!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조용히 살란 말이지? 나를 위해서? 나 하나 입다물면 집안이야 조용해지겠지. 그래,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참고 살아 버릴까?**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생활이 반복되면 어쩌지. 갑자기 줏대없이 흔들리는 휘황한 인간을 본다. 그럼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볼까나. 남편 승진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 자식 공부 잘하는 거, 새 집 장만하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이 나의 행복일까.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나, 본연의 나를 만나고 싶다. 이런 나에게 이기적이라고, 가정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여편네라고 돌을 던질 자 그 누구인가. 없지? 숭고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모든 여성들의 희생을 강요하려고 함부로 덤비지 말란 말이다. 참고 살아 봤자 알아주는 이 없다. 설사 알아준다 해도 이미 흘러간 내 인생까지 보상해 줄 수는 없다. 그래 결심했어! 더 늦기 전에 내 인생을 찾겠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가질 것이다. 본연의 나로 다시 일어선다. 먼저 내 생각을 당당히 말할 테다.

신이시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자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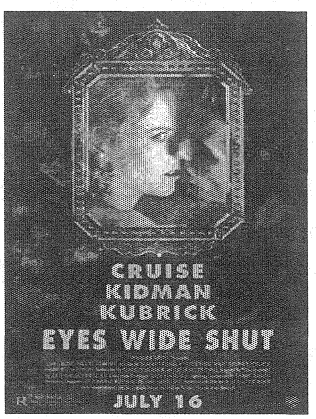
"여성 영화인들, 드디어 뭉치다"

권씨, 네도 영화보러 갈래?

지난 4월 19일 '여성영화인 모임'이 창립총회를 열었다. 여성영화인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여성 영화인력의 저변확대를 목표로 영화제작, 배급, 홍보마케팅, 평론, 언론,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영화인들의 조직인 '여성영화인 모임'이 4개월 여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정식으로 출범한 것. 강기원 여성특위 위원장, 유길촌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배우 고은아, 정지영 영화인회의 이사장 등이 함께 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채윤희 올댓시네마 대표가 회장을 맡았고, 고갑희 한신대 교수, 이계경 여성신문사 사장, 배우 최은희 등 8명이 자문위원으로, 김미희 좋은영화 대표, 변재란 영화평론가, 심재명 명필름 대표, 유지나 동국대 교수, 김소영 영상원 교수, 변영주 영화감독 등 18명이 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여성영화인 모임'은 회원간 정보교류 및 여성영화인 인력뱅크 운영, 여성영화인력 양성 및 여성영화인 재교육을 위한 교육사업, 국내여성영화인의 작품에 대한 국내외 배급사업, 여성영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지원사업, 해외 여성영화인 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를 올해 주요 사업으로 꾸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02)3474-4262

여성신문중에서



『아이즈 와이드 셧』

[아이즈 와이드 셧]이란 '질끈 감은 눈'을 뜻하는 말이다. 제목이 암시하듯 큐브릭이 선택한 13번째 작품의 주제는 누구나 마음 속 깊이 갖고 있지만 결코 들여다 보지 못하는 본능의 세계, 정확히 말하면 '성적 강박관념'의 영역에 닿아있다.

9년간 무엇하나 부러울 것 없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누려온 뉴욕 상류층 부부가 빠져드는 성적 일탈과 환상...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거짓이 벗겨지면서 드러나는 순수한 욕망... 인간의 본질을 집요하게 탐구해온 큐브릭은 그렇게 현대인들의 꼭 감아버린 두 눈을 활짝 열어제치고 그 앞에 충격적인 성적 오딧세이를 펼쳐보인다. 평온한 일상 뒤에 감추어진 뒤틀린 욕망, 이상과 현실의 좁혀지지 않는 거리. 행복해 보이는 결혼 생활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대저택의 혼음 파티..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인간에 관한 영화"**라는 큐브릭의 설명대로 [와이즈 와이드 셧]에서 그는 오랫동안 억눌려온 욕망의 원형을 그만의 독특한 몽환적 영상으로 그려내고 있다.

톰 크루즈, 니콜 키드만

2000년 아카데미의 가장 유력한 후보!!

만족할만한 연기를 얻을 때까지 수십 차례 NG를 외쳐대고 애초에 약속했던 촬영기간은 무한정늘어가고 촬영기간에 일체 다른 일에는 참여할 수 없는 약조건에 출연료도 많은 큐브릭의 작품 출연을 두말없이 수락한 헐리우드 최고의 커플.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만. 300일이 넘는 촬영 기간 동안 아예 가족과 함께 촬영지인 런던으로 그들의 거주지를 옮겨 버렸을 만큼 처음부터 두 사람에게 큐브릭과의 만남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 일이었다. 베니스 영화제 인터뷰에서 니콜이 "큐브릭에게 커뮤니케이션을 배웠고 연기가 무엇인기를 배웠다."고 말했을 만큼 그들은 큐브릭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연기 인생을 얻게 되었다.

[아이즈 와이드 셧]이 세상에 공개된 후 언론과 평단은 다음 아카데미의 영광은 톰과 니콜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확신에 찬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감 독 :
스탠리 큐브릭
주 연 :
톰 크루즈, 니콜 키드만
제 작 사 :
워너브러더스
각 본 :
스탠리 큐브릭,
프레드릭 라파엘
제작년도 :
1998 년
등 급 :
빨간 띠.

스릴러 코미디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데 충격적인 묘사가 일품이다. 이 어줍잖게 귀에 거슬리는 코미디에서 최근 공포영화의 패러디적인 희화성을 엿볼 수 있다. 설사 감독이 "블레어 워치"나 "식스 센스"에서 패러디한 것이 아니라고 우길지라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영화이다.

장 르 : 코미디/공포/미스테리
국 가 : 미국
제작년도 : 2000 년

『무서운 영화』



♥부모성 함께 쓰기는...

부모성 함께 쓰기는 1997년 3월 9일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3회 한국여성 대회에 서 부모성(姓)함께쓰기 선언자(이이효재 외 170명)들에 의해 선언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한 가부장적 의식구조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습니다. 남자만이 생명의 씨앗을 생산한다고 생각하는 무지에서 출발한 법과 관습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셋째 아이의 출생성비는 300(남):100(여)에 이를 정도로 한국의 인구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성차별은 필연적으로 국가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로 확산되고, 이것은 민주사회를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이미 선진국들에서는 부부의 합의에 의해 공동성(姓)을 정하거나 아이들에게도 부 · 모 중 한 쪽의 성을 선택하여 물려줄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대를 잇는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 잡혀 여자아이만 골라내어 낙태시키는 야만적 행위는 한국 이외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무시되고 소외되어왔던 모계를 살려냅시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사랑이 우리 사회의 에너지를 높일 것입니다.



"부모성 함께쓰기가 뭐죠?"

♥ 부모성 함께 쓰기를 하려는데...

1)후대에 갈수록 복잡해지지 않는가?

이것은 문화운동이므로 후대는 후대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할아버지(아버지의 아버지)의 성과 할머니(어머니의 어머니)의 성을 택하면 글자가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예로 김서갑돌과 이정갑순이 아이를 낳으면 김정하나, 김정두울이 됩니다. 어감이 나쁘면 순서를 바꾸거나 할머니성을 택할 수 있습니다. (성씨에 대한 강박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2)혈통, 뿌리찾기가 흐려진다.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그간의 혈통, 뿌리라고 하는 개념은 여성을 전적으로 소외시킨 독선적 개념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으로 획일화된 질서는 양성중심의 문화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들을 통한 대 잇기'라는 허구에 기초한 강박관념 때문에 일년에 3만 이상의 여아를 감별 후 살해하는 국민정서는 계속 보호받아야 할 정서가 아닙니다. 지구촌의 한 사람, 단군의 아들 딸, 성실하고 당당한 시민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국민정서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부모성 함께 쓰기를 잘 하려면

필명이나 예명으로 늘 사용하여 생활화합니다. 부모성을 쓴 이름으로 명함을 만듭니다. 동아리, 단체모임에서 이와 관련 한 행사를 합니다. 남녀를 차별하는 호적법 등 모든 법과 관습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변화 되도록 늘 노력합니다.

♥ 부모성 함께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에버맨님의 글을 옮깁니다.

『EVERMAN이 생각하는 부모성 함께 쓰기』

부모성 함께쓰기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은 무척 천박한 수준입니다. 물론, 부모성을 함께 쓰시는 분들도 그 모양이야 같지만 이에 대한 인식의 높낮이도 무척 차이가 있을 것이구요..

A: 와, 부모성 함께쓰기라? 어머 너무 좋아...에서 .

z: 그러므로 부모성 함께쓰기는 이러한 철학적 맥락과 이데올로기적 견지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까지...

무지무지 편차가 클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름에 '공' 자 하나 붙인 죄로 고백할 이야기는 A-Z 중의 아무대나 대가리 들이 밀며 수준을 가늠하셔도 무지하게 무방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문은 부모성 함께쓰면 멀리도 갈 것 없이 한 10대만 내려가면 '성 부르다 늙어 죽는' 꼬라지가 나타날 것이 아니냐 하신 것인데, 제가 알기로 성은 최소2자에서 최대4자 에서 결판납니다..그러니 이름은 최소3자에서 최대6자가 끝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김** + 박** = 김박**] -> 이건 아실테고, [제갈** + 선우** = 제갈선우**] -> 이렇게되죠.. 그렇다면, 예컨데, 김박**과 박최**이 만나면 [김박박최**], 또 여기다 [김박박최**]와 [김공최남**]이 만나면, [김박가최김공최남**], 이후 nano, nano...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당연히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문은 부모성함께 쓰기의 취지를 제가 아는 한 오해하는 셈입니다..(제가 아는 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성 함께쓰기는 엄마쪽 의 가문을 ' 아빠쪽 의 가문에 양립시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성 함께쓰기는 가부장제를 비판하며 나온 방안이기 때문에, 그 역인 가모장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이든 가모장이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엄마성도 사실은 그 엄마의 아빠, 즉 외할아버지의 성이기 때문에, 엄마성 양립시켜 쓰는 것이 무슨 가부장제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겠냐 이말입니다.. (결국 다 아버지들의 성이 양립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오히려, 부모성 함께쓰기는 잠재적으로 '성(last name)'이라는 것은 2세대간에 국한되는 반반의 공통코드로 쓰자는 것이고 3세대 이상 올라가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빠 · 엄마성이 같은 아이들이 친구로 지내도 그 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예를 들면, [김** + 박** = 김박**, 박김**] 이건 아실테고, [김박** + 고은** = 김고**, 김은**, 박고**, 박은**, 고김**, 은김**, 고박**, 은박**] 식으로, 아버지쪽 성에서 한자와 어머니쪽 성에서 한자를 따서, 그 순서도 아버지성을 먼저하든 지 엄마성을 먼저하든지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성씨가 같은 아이들이 친구여도 성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마 친사촌간에도 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황당하죠? (아마 가문 중시하는 사람은 이런 천하의 쌍놈들이 있나 하실 겁니다... 눈에 훤합니다...)

그러니, 성을 모조리 갖다 붙여서, 성 부르다 늙어죽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최대한 길어야 '제갈선우**' 정도의 여섯자 일 것이고, 설마 그거 부르다 늙어죽기야..... 더구나 우리의 관습에서 성까지 함께 부르는 경우는 그리 빈번한 경우가 아니므로 큰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 셈입니다..(뭐 조금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현재 4자의 이름에 많이 익숙해졌으니 서서히 5자나 6자의 이름에도 익숙해지는 거야 세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결정적인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도대체 그럴 바엔 성을 뭐하러 쓰느냐는 것이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부모성 함께쓰기는 가부장제의 대립개념으로 여부장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여부장제 모두 필요 없고, 더구나 그 가문을 나타내는 '성'이라는 코드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죠.. 즉, 성은 2세대의 가족(즉 부모-자식)만이 유대를 확인하는 코드가 되는 셈이고, 가문이고 나발이고가 들어설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해 보신 분들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나중이 되면 성을 쓰든지 아니면, 성 없이 이름만 쓰든지 하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이건 더욱 황당하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모성함께 쓰기를 주장하는 근본의도는 이런 거라고 에버맨은 생각합니다.. 즉,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는 코드로 족하다'** 이거죠.. 요컨데, 그 이름에 가문이 들어가고 그 가문이란 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하는 일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건 가부장에 대한 타격도 타격이지만, 엄청난 문화적 아노미를 유발할 것임은 자명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성이 가지는 의미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죠.

젊은 세대라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부장제와 잘났든 못났든 가문을 놓고 벌어지는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대한 일대 혼란을 야기 시킬 것을 의도하고 쓰는 래디칼한 분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부모성 함께쓰기는 소수에 그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추세라, 어른들이 보기에 마치 젊은이의 신기한 문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알면, 또 그 수가 만만치 않게 늘어나면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가부장에 대한 핵폭탄이 터지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럴 필요가 있느냐는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또 잘 지냈던 세대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우려에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극과 극은 통하는 걸까요...황순택님이 말한 것처럼 여자가 결혼하며 남편성으로 바꾸어 버리는 영미의 이름에 대한 관념보다, 이 부모성 함께쓰기의 폭발력이 더 커 보이니 말입니다..

제가 왜 '극과 극이 통한다'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가문이라는 것으로 인해 한국에서 자행되는 영아살해와 법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여성들이 보호되거나 지지되는 정도가 말할 수 없이 서구에 비해 수준미달인 지경이라, 이런 서구에서조차 받아들이기 거북한 부모성 함께쓰기라는 주장과 운동이 나왔다는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황순택님의 대안, 즉 한국도 영미처럼 결혼하면 아내성도 남편성으로 바꾸는 것은 부모성 함께쓰기를 주장하는 이들에겐 택도 없는 주장입니다.. 왜냐구요? 추측이 안되나요? '성'이라는 코드로 가문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저항이 있다는 거 말입니다.

앞서말한 영미개념이 황순택님이 주장하실 정도로 한국의 이름관념보다 나은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시겠죠... 즉, 남편성을 따르는 것이 한국에 비해서 나은 것인가 하는..제 생각엔 이는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나은 관습입니다.

어릴 적에 미국은 결혼하면 여자성이 바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같이 있던 여자들이 그럴 수가하며 분노하는 것을 종종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남편쪽 생각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지요.. 더구나 우리 나라는 여자가 결혼해도 성이 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왜 한국보다 나은 관습일까요?

물론, 황순택님도 대안으로 삼으셨으니, 그 이유를 알겠지만, 영미에서 결혼하면 여자성을 바꾸는 것, 한국은 결혼해도 여자성이 건재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의미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영미에선 결혼하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가족이 공유하는 코드인 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결혼해도 여자의 성이 바뀌지 않는 것은 여자가 문을 존중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심한 박탈감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딸보다 아들 낳기'에 연연하는 것은 그 집안의 대를 잇고 성을 이어갈 후손을 낳아 줄 때에라야 자신이 그 가문의 일원이란 소속감을 갖고 그렇게 유지시킨 가문이 기에 새로 들어온 후보가족인 며느리에게 아들을 낳을 때까지, 혹은 아들을 못나을 경우에 가혹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었을까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되어도 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 항상 준가족이란 불안한 관념 속에 그 가족의 일원이란 것을 더욱 강하게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보장받기 위해 때론 남자들보다 더욱 지독한 가문의식과 그 행태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자성이 바뀌는 것에 분노했던 여자들은 실상은 결혼하고 애를 낳아도 준가족 개념 으로 취급하며 받아들이지 않던 한국의 가문에 실은 더 분노했어야 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제가 부모성 함께쓰기에 대해 말하며, 영아살해를 예로 들었는데,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곳이 남녀성비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런 겁니다. 참고로, 가장 심한 곳은 경상도 쪽이고 가장 자연비에 가까운 성비를 보인 곳은 제주도입니다..

여하튼, 제가 생각하는 이런 부모성 함께쓰기에 대한 생각이 실제로 이를 추진하는 분들의 의도를 정확히 읽었는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그 궤적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로는 이런 저의 추측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뿐이죠...

아마, 이 글을 읽고 부모성 함께쓰기를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생각이 우호적이다가 천하의 잡것들이란 쪽으로 기운 분들도 계실 지 모르지만, 그 본질적이면서도 파괴적인 방향성에 새삼 그 운동을 다시 보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느 쪽이냐구요?

제가 부모성 함께쓰기로 했다는 것에서 뭐 느끼는 거 없나요? 아직 이 부모성 함께쓰기의 파괴력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만개할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섣불리 예단하긴 힘들지만, 조만한 극한 점에서 스파크가 튀고 난리가 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성을 함께쓰지 않는다고 눈흘기거나, 강요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 생각해서 사용하는 분들은 적어도 한국에서 아직도 맹위를 떨치는 가부장제와 언젠가 전면적으로 벌어질 전쟁에서 적어도 사용해왔다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그 문제를 다시 고민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은 아닐까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사용안하시는 분이 적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페미니즘에 관계된 문제는 사실 '에버레스팅' 인 사안인지라, 이거 가지고 머리를 혹사시키고 싶은 마음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 기득권인 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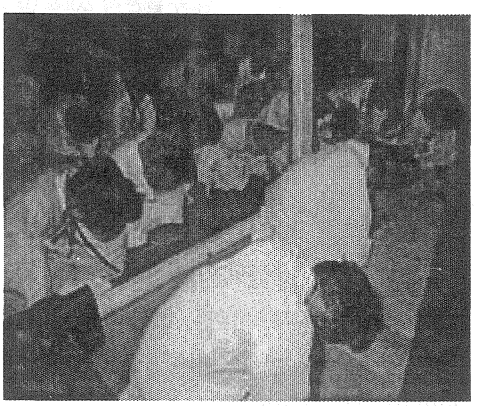
하지만, 그 기득권을 등받이 해 함부로 난봉질을 해대는 인간에게는 쌍칼을 들고나설 각오는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준비된 자해저격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공자 99대손이신 어머니 성을 함께 사용했다가 김해김씨 문성공파 76대손이자, 공자 100대 외손인 EVERMAN 오늘 말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계보가 나에게 무슨 찬란한 의미가 있을까. 족보학하시는 분들 들으면 밥그릇 깨지는 소리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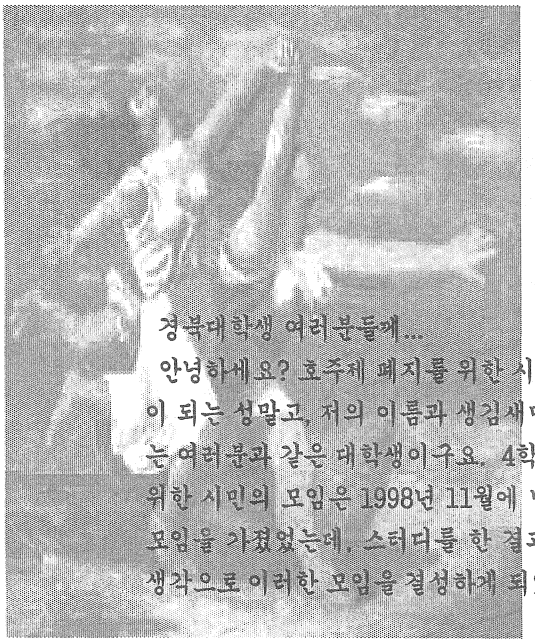
EVERMAN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퍼왔습니다.

자유 2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에서 활동중인
아라님이 주신 글입니다.



호·폐·모가 뭐예요???

경북대학생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의 아라입니다. 윗대를 올라갈수록 2의 n승이 되는 성말고, 저의 이름과 생김새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성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이구요. 4학년입니다.(아~ 걱정된다 취업~~) 저희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은 1998년 11월에 발족했습니다. 원래는 다같이 호적법에 대해 공부하는 모임을 가졌었는데, 스터디를 한 결과 이놈의 호주제를 폐지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를 알려면 호폐모에 오라.

저희 모임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군 데서 활동을 합니다 . 저는 두 군데의 활동 모두에 관여하고 있구요. 저의 모임 홈피인 http://antihoju.jinbo.net는 고은광순님, 송이님, 붉은여우님, 유재언님 등 많은 회원분들이 활발한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원들보다 더 활발하게 글을 올려주는 분들이 유령 마초입니다.

' 여자여 너희는 덜떨어진 인간이니 하녀로 살라 ' -남성 우월론자 2000 07 20 22

' 앞못보는 여자야 보거라 '
- 어리석은것들 2000 07 16 20

' 이씨발년 말하는것 존나 열받게 하는군..
박경환 2000 07 11 25

' 이기주의적인 여성 들에 대한 경고!'
- 진렴 2000 07 05 24

' 어리석은 여성들 보아라'
- 어리석은것들 2000 07 03 17

' 씨발년아 조디 닥치라...'
- 서울대생 2000 07 02 38

좀 심하다구요? '미친개잡년들의 이기주의'나 '깜둥이 좆을 빨고 싶다' 같은 성적비하가 담겨 있는 말로 몇 페이지 도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백, 수천 개씩 점만을 찍은 게시를 올려 홈피가 마비가 된 것도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넘을 도배돌이라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관계로 사이버 수사대에 요청을 해도 잡기가 어려울 것 같다네요. 일상 생활에서 여성 일반에게 저런 비하의 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굴 안보이고, 이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야말로 본색이 드러나죠. 남자가 궁금하시다구요? 호폐로 오세요~ 거긴 어쩜 당신 애인의 본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호주제요? 전 호주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저희 모임이 창립된 이래로 매달 셋째 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대학로에서 거리 서명을 받습니다. 띠를 두르고, 유인물을 나누어주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서명을 받습니다. 1999년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부터 서명을 시작했죠. 처음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겠노라고 다가서면 전 호주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슬금슬금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 호주가 그 호주인가....

호주제는 호주와 관련된 민법상의 일련의 조항을 말하

지요. 그런데 결혼 안한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는지 그럴 때는 길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따라 가면서 설명을 해드리지요. 처음에는 거의 '도에 관심 있으세요?' 수준으로 보고 도망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추운 겨울, 한라산 정상보다 춥고, 설악산 대청봉보다 따뜻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산수도인 취급을 받아가면서 대시민 홍보에 나서고, 여러 회원분들이 매체에서, 강연 활동으로 활동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많은 분들이 호주제 폐지에 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스스로, 알아서 서명대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서명을 해주셨어요.

저기 가는 각시 날 좀 봐요~

나는 못된 여자인가?
여성운동이나 하는?

거리 서명을 받다보면 제일 서명을 잘해주시는 분은 딸 가진 어머니들, 일단의 학생들, 학생들은 남학생, 여학생 상관없이 다 서명을 잘해 줍니다. 이 정도가 일 순위이고, 그 외 어려운 부류는 할아버지, 중년 아저씨들입니다. 근데, 의외로 힘든 게 애인과 같이 가는 여자분들이세요. 남자 애인은 서명을 하는데,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몇 번 봤습니다. 저기 가는 저 각시~ 서명하고 가세요. 여자를 이등인간으로 보는 호주제, 분하지도 않습니까? 어서어서 폐지하자구요. 여러분의 서명이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사귀고 있다~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은 시민 운동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우리는 대표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단지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겠노라는 시민이 있을 뿐입니다. 그 시민이 회원이 되고, 좀 더 자주 나오고, 일을 맡게되는 회원이 되면, 편의상 운영위원이라 부릅니다. 그 운영위원들은 기획부, 인터넷 부, 상설 노가다 부에 속해도 되고 안 속해도 되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 알아서 움직임입니다. 대개의 경우 어떤 일이 있으면 말 꺼낸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고, 거기에 다른 분들이 도와주고 있는 형태이지요. 보통 우리 사회 생활하다보면 나서는 사람들은 피곤해지잖아요. 호폐는 다릅니다. 자율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살아있는 동네지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더 친하고 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함께 보냈어요. 음주가무는 물론이고, 남자 회원 여자회원 할 것 없이 한 이불 속에 들어가 수다를 떨었어요, 한 번 앉았다하면 24시간을 넘기는 호폐모 회원들~ 우리는하나의 공동체 형성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끼리 가끔 이야기를 하지요. 호주제 폐지 얼마나 걸릴까? 동성동본이 몇 십년이 걸렸는데, 호주제도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야…동성동본의 선례를 그대로 밟아갈 필요는 없어, 호주제는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힘의 등장으로 더 빨리 폐지될꺼야. 난 10년이내야. 나도. 호주제 폐지되면 우리 뭐하지? 우리 그럼, 호폐 악단 만들지…너는 기타치고 누구는 건반하고 …노래도 못한다고? 그럼 춤이라도 추어야지…하고요

호주제 폐지운동을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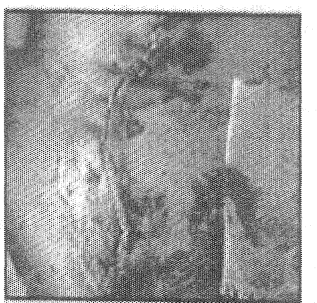
저는 호주제 폐지운동에 1999년 1월부터 참여했습니다. 제가 인터넷부의 일을 맡아 운영위원이 된 것은 작년 10월의 일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말도 안되는 현상,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남녀차별을 비롯해서 여러 현상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데에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호주제 폐지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 같은 바램을 안고 모인 여러분들…특히, 고은광순님 등을 만나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기두 생겼구요,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 '호주제' 가부장제의 살아있는 원흉 '호주제', 이 호주제 조차 폐지하지 못하면 이거 우리나라 망하겠다. 이것 꼭 폐지하리라, 할 수 있다하구요. 지난 달 심지어 조선일보 조차도 호주제 폐지에 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금 민변과 가법등 여러 단체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연대를 결성하고 헌법 소송을 위한 원고 인단 모집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오한숙희씨 등 저희 호폐모 회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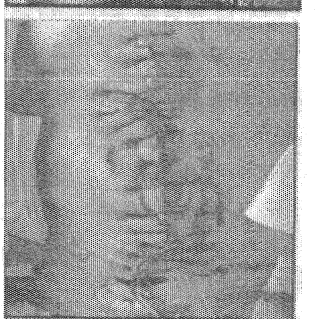
경북대 학우 여러분,
일제의 잔재이자, 여성을 도구로 보는 ,
호주제는 곧 폐지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저희 호폐모와 호주제 폐지에 계속되는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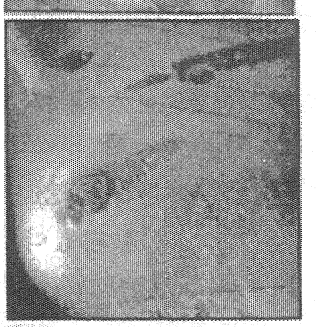
자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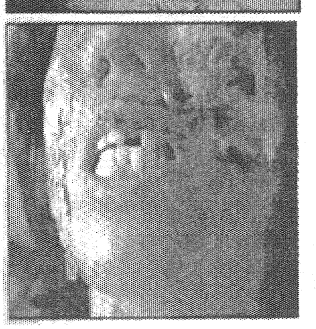
가정 폭력의 극치 '정선호사건' 그 이후…

요즘 세상에는 참으로 엽기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조금만 웃겨도 '우와 ~~! 엽기적이다...'라는 말을 쓸정도로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엽기적인 사건이 인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가벼운 엽기가 아니라 진짜 기괴한 것을 좋는다는 뜻의 엽기라는 단어에 걸맞는 사건이었습니다. 정선호 사건....물론.. 저번 문화제 때 자보붙이고 모금운동도 하고 상대 ,복지관의 경과 자보를 봐서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그 이후, 재판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사건의 전말을 전합니다.









[사건내용]

2000년 4월 8일 저녁 7시경 남편 정모씨는 술을 약간 먹은 상태(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과 안주를 갖고 들어와 아이들을 각각 서로 다른 이웃들에게 재워줄 것을 부탁하여 보낸 후에 현관문을 잠그고 재차 철사를 이용하여 이중으로 걸어 잠그고 아무 말도 없이 피해자 김씨의 옷을 벗겼고 곧바로 뺀지를 이용하여 철사로 양쪽 엄지손가락 끼리 묶어서 운동기구에 고정하고 양쪽 엄지발가락끼리 묶었다. 이때 피해자는 주위의 안목과 아이들을 생각하고 반항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 후 정씨는 온몸을 발길질하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서 가스에 커피포트를 올려 물을 끓인 후 가슴과 얼굴 및 하복부에 한차례 부은 후 커터 칼로 얼굴과 하복부를 위에서 아래로 조밀하게 그었다. 평소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정씨는 아내의 계속되는 부인에도 불구하고 재차 얼굴의 왼쪽을 귀에서부터 입술까지 상악골 부분을 뼈가 보이고 신

경조직이 파손될 정도로 깊이 긋고 그 상처에서 피가 흐르자 빨아 먹었으며 다시 끓는 물을 얼굴과 몸 전체에 붓고 전기 인두와 담배 불로 얼굴과 눈 부위, 하복부 및 가슴을 수없이 지졌고 그 후 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차라리 죽어서 나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다고 하자 미리 준비해 온 술을 억지로 먹인 후 전선을 분해하여 찬물을 상반신에 끼얹은 뒤 전기콘센트에 연결하여 고통을 주었다. 이때 온몸이 오그라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하자 또 다시 전기충격을 하여 피해자가 기절하자 물을 끼얹고 정신이 들은 피해자를 뺀지를 이용하여 생이빨을 잘랐으며 다시 기절한 피해자의 음부 주위 및 하복부를 부엌칼로 찌르고 휘저어 소장을 천공시킨 상태에서 피해자를 2-3시간 방치하여 복막염을 발생시킨후 119에 신고 하였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는 비명을 질러 주위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

-6월 10일
'정선호 사건 1차 심리가
인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였으나 스카프로 입에 재갈을 물렸고 또한 주위사람들도 단순 부부싸움인줄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가해하는 동안 이웃사람 일부가 문을 두드리자 웃옷을 벗은 상태에서 현관 옆방의 창문을 열고 "나도 여성의 인권을 아는 사람인데 내가 설마 폭행을 하겠느냐, 내가 그러는 것 봤느냐, 우리도 부부싸움 좀 하자"며 문을 닫았다고 한다. 경찰에 구속된 상태엔 가해자는 만일 자신이 구속되면 아이들과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자신이 풀려나야 치료비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도리어 큰소리를 쳤다.피해자는 주위에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면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항상 주위를 살피며 가족이 있어야 안심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공황상태이다.

피해자의 가정은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이어서 치료비와 수술비등의 막중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다행히도 피해자는 1급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받았다.

피해자 김씨는 김씨의 큰아이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큰 아이 역시 그동안 지속적으로 아버지로부터 구타를 당해왔고 어머니가 힘들어 할 까봐 숨겨왔으나 이번 엄마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면서 내면에 숨어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떠올라 무척 힘들어 한다. 대인기피증으로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숨기만 한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선호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흉기를 사용한 것이나 끓는물, 전기등을 사용한 부분이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고 자신의 진술마져 몇 차례에 걸쳐 번복을 하는 등 비열한 태도를 보였다.

-6월 2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피해자의 서면진술로 증언을 대신하는 재판이 열렸다.

증인진술에 의한 판사의 사실조사와 검사의 의견진술, 변호사의 최종진술과 피고의 최후진술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피고는 " 차라리 포청천제도를 도입하여 개작두로 목을 쳐 달라.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쓰레기도 재활용을 하는데 자신도 국가와 여성단체에서 재활용해 줄수는 없겠는가? "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가려는 태도를 보여 방청객들의 비난을 샀다.

다음재판은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정되었다.

-7월 8일
검사의 구형대로 15년형 판결을 받았다.

7월 8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김기원판사의 합의부 최종 선고가 있었다.

판사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기 보다는 변명하고 합리화 하기에 급급하며 119에 신고한 행위도 살인죄등의 죄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의 행위가 정상을 넘어선 잔인한 수법과 함께 수감중에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등의 내용에서 보여지는 면책을 유도하는 의도등을 감안하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단호하게 표현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적용에도 피고의 유래없는 잔인한 행위와 이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태도등을 고려해 볼때 앞으로 사회에 끼칠 해악을 감안하고 이미 가정이 유지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어, 가정이 지속될 수 없음을 판단하여 법률적용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하여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7월 20일 가해자 정선호는 항소를 했고 현재 항소 재판날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선고내용 일시: 2000년 7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판사: 김기원

피고인은 본 판결 이후에 불만이 있을시 7일 이내에 항소 할 수 있다.

피고는 본 공소사항중 일부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지를 폭행하고 칼로 얼굴, 생식기등을 살짝 그은 사실은 기억나나 나머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결혼후 13년 이상 잘 살아오다가 통장에서 거액이 출금된 사실을 다그치다가 간통했다는 자백을 듣고 순간적으로 범행 했다고는 하나 13년이상 잘 살아오다가 갑자기 범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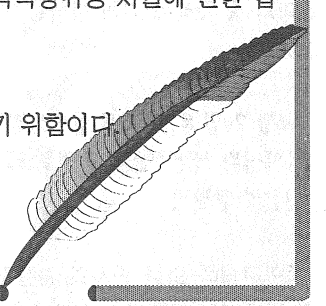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생활에 기여하지 못한 불만과 울분이 쌓여 아이들에게도 강제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던 중 통장에서 출금이 된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자백을 받으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술에 만취해서 한 분별력없는 행동이라고는 하나 증거자료를 보면 다소 취한 상태이나 온갖 잔인한 수단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죽음보다 잔인한 범행을 저질러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상처를 가했고 평생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중대한 상처를 주었다.

13년동안 잘 살아온 가정으로 보여지나 제 3자가 알수 없는 것이 있으며 자녀들이 장성해서 아버지를 찾지 않을 까하는 생각에서 피고인의 용서를 구하지 않을 까 하는 검토을 했으나 피고가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뉘우치지 않고 술에 취해 저질러진 행위라고 부인하고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을 정당화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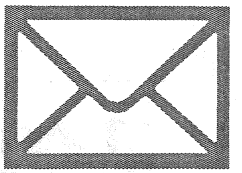
또한 피해자에게 그동안 보낸 편지를 보면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지금의 구금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보인다. 피고가 119에 신고한 것 또한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쳐 자수했다기 보다는 살인죄등의 죄책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자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점으로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범행후 어떻게든 구금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므로 피고의 잔인한 범행과 범행후의 태도로 보아 정상참작이 불필요하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중 가장 무거운 형으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는 가정과 아이들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아이들이 엄마께 보내는 편지 중에서



사랑하는 엄마께

엄마! 건강하셨죠. 전 00라고 엄마딸 이예요. 알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많이 편찮으셔서 걱정이 되요.

그래서 요즘엔 많이 나으셨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일이 생겼을 까요 후-- 으- 열받다.

그리고 아빠 빨리 잊으세요. 뭐 사실 아빠도 아니지만요.

엄마! 부탁이 있어요. 어린이날 선물 못해 줬으니까 소원 들어 주세요.

뭐냐면 뒷장을 보면 아실거예요.

첫째: 그놈(아빠) 잊는 것!

둘째: 서울가면 행복하게 살 것!

셋째: 건강할 것!

넷째: 이름 바꿔 줄것!

엄마 내 이름도 바꿔줘! 그놈이 불렀던 거잖아 아찌?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00올림-

엄마! 건강하셨죠.

전 00라고 하고 엄마 딸이예요. 히히-

요즘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걱정이 많이 되요. 오월은 가정의 달인데 왜 이런일이 생겼을 까요? 으- 열받아 이런 얘기 쓰긴 좀 그런데?.....이 얘기 듣고 또 마음아파 하지 말고 엄마 이렇게 만든 미친놈은 잊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엄마가 꼭 들어줘야 하는 내 소원이 있어.

뭐냐면 미친놈 잊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거랑 엄마 빨리 낫는 거야. 원래 어버이날에는 엄마 업어주는 거랬는데 못 업어줘서 미안! 난 빨리 이곳에서 떠나고 싶어. 미친놈이 살았던 곳이잖아.

난 그 미친놈이 살았던 집도 이제 급한일 빼고 안간다. 엄마가 아팠던 곳 이잖혀...

나 인기 되게 많다. 나 전학간다니까 애들이 다 주소 물어봐

그러니까 엄마 내걱정하지 말고 엄마나 빨리 나아. 알았지?

그럼 이만 쓸께용~~ (뽀뽀) 쪽~

kiss 안녕~

어버이날

-00올림-

교수와 제자사이 Behind

올 여름 복현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바로 "이충섭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 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을 것이다. 그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성폭력 사건이 학내에서 비일비재했지만 그저 한 여학우가 재수없이 당한 일이라 넘어가기 일쑤였던 것이 우리 학교의 실정이었다. 그에 비해 이번 사건은 사이버 상과 각종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저 한 여학우의 불행으로 넘겨버리기에 성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케 했다. 교수마저 학생을 학생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이곳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이 정의고,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충섭 사건이 뭐예요?

아직 개강의 들뜬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학동안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로 수다떠느라 이충섭 사건에 대해서 못들어 봤다고? 이런.피해 여학우의 개인적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너무 자세하지 않은 선에서 사건의 전말을 얘기해 주지(물론 이번 사건의 초기 공개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이미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피해자의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충섭 교수는 우리 대학 인문대 독문과 교수고, 피해 여학우는 독문과 학생으로 지난 학기 이충섭교수의 시사독어라는 원격 강의 과목을 수강했대. 첫 대면부터 이 교수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 왜 가끔씩 학생들과 개인적 친분을 쌓으며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들도 계시잖아? 하지만 이후로 이 교수의 행동은 비상식적이다 못해 몰상식적인, 감히 교수가 제자에게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고 만 것이지.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내지 않나 교수 연구실로 불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려 하지 않나, 전화를 걸어 음란한 요구를 하지 않나. 이건 누가 보고 들어도 명백한 성추행임을 다들 알꺼야. 근데 이교수는 자신이 한 짓(!)을 강력히 부정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이고 있어.

이 교수가 이번 한번이라면 어느 누구 동정하는 사람이라도 있겠지. 하지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다른 피해사례도 여럿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미 과내에서는 '남학우들 보다 여학우들의 성적을 높게 준다' , '수업시간에 여학우의 가슴과 다리를 계속 쳐다본다' 라는 말이 공공연한 사실로 거론되고 있었구.

이 사건을 흥미있는 가쉽거리 정도로 여기고 내 일이 아니니까 관심밖으로 밀어 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 내 여자친구, 내 동료가 언제 당할 지 모르는 일이니까 말야.

성폭력 학칙제정을 통한 올바른 성문화의 정착

작년 자유지에서 우리는 성폭력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었고, 교내 사례를 수집하면서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폭력 학칙제정에 관한 고민들을 하였고, 사회대 여학생위원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공청회도 있었다.

올 여름 학내 성폭력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기존의 사건이 쌍방의 합의에 의한 사과 또는 피해자의 사건 공개 거부등으로 인해 묻혀버린 것과는 달리 세상에 공공연히 알려지면서 가해자의 법적 처벌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성폭력이 남성이라는 상대적 권력자가 약자인 여성에게 가한 정신적, 물리적 폭력이라는 점에서 볼 때,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교수라는 권력이 약자인 학생에게 가

한 폭력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본다.

권력이 작용하는 사건은 어떠한 궁극적 해결점도 찾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속으로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속에서 경험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도 그럴 기미를 농후하게 보이고 있다.

이교수가 물론 구속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지는 몰라도 정작 학교 당국에서는 이 사건을 해결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 여학우에 대한 조사는 벌써 마치고도 이 교수에 대한 진상조사는 그를 만날 수 없다는 핑계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개정된 교육 공무원 법령에 따르면 이전까지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국립대 교수의 해임권을 학내에서 징계위원회를 꾸려 해임할 권한을 총장이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학교 당국은 징계위원회가 아닌 진상조사위를 꾸려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 이는 동료교수들마저 그를 교수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에서 당국이 이충섭을 옹호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과연 학교 당국이 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교수의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두 번 다시 그런자가 강단에 설 수 없도록, 권력에 빌붙어 자기 욕구나 채우려는 사람들에게 따끔한 본보기를 보여 주어야 한다.

'여자에게도 뭔가 잘못이 있겠지...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 한가지 더 있다. 의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자에게도 뭔가 잘못이 있겠지...'라는 의견이 나오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이런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정의의 저울 위에 올라서지 못하고 사라져갔다.

피해여성이 정숙하지 못했다는 의혹만 더욱 확신시키면서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잘 꿰뚫어야 한다. 그 사건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피해 여성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가해자로부터 직접 당한 폭력의 상처와 함께 조사과정, 공개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까지 이중의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피해자 자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 피해 여학우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인문대에서 그 여학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른 단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사건이 초기 공개화되는 과정에서 이미 신분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일단 사건을 공개화 하기 전에 피해여성에 대한 신변보장이 우선했어야 했다. 이 사건에 직면할때,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보다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을 학내 성폭력 근절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도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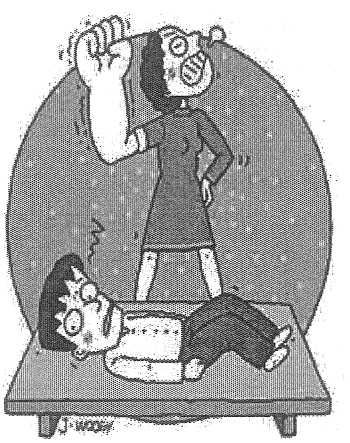
지금 본관 교무처에서는 성폭력 규제 학칙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어떤 내용에 근거하고 있고, 어떤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성폭력 규제 학칙은 말그대로 학내 구성원들(학생, 교수, 교직원)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 스스로가 강제력을 가지고 처벌함과 그에 앞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학내 사례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민족복현의 실정에 맞는 학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한 체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학칙을 제정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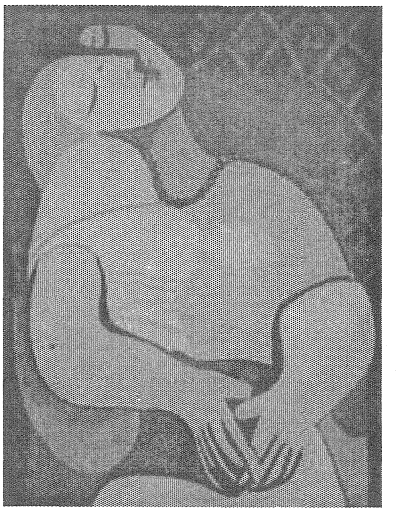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학칙이 제정되어 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다른 대학들의 사례에 대해 익히 들어왔다. 우리마저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학칙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성폭력이라는 것이 피해자 중심의 사건구도를 가지므로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성폭력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가해자 역시 또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학칙제정을 통한 학내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이다. 따라서 처벌의 방식에 있어서도 범죄 수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정학, 징계등이 아닌 다양한 방법이 이야기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교육의 의무화, 성폭력 신고 센터 설치 등도 필요하다.**

그동안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의 필요성을 말로만 했지 선뜻 누가 나서서 움직임을 만들지못했다. 이제 이만 복현인이 다 함께 일어설 때다. 더 이상 현실과 타협할 수만은 없다. 제 2, 제 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 학칙 제정을 꼭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상습적으로 제자 성추행을 저질러 온 독문과 이충섭 교수가 지난 8월 31일 오후 6시경 구속되었다. 8월 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3차에 걸친 대질심문 결과 성폭력 범죄에 있어 성추행죄가 확인되었고 조사과정에서 비양심적인 언행을 일삼아 괘씸죄가 추가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충섭 교수는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있고 10일에 대구구치소로 이감될 것이라고 한다.

학칙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성폭력이라는 것이 피해자 중심의 사건구도를 가지므로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성폭력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가해자 역시 또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학칙제정을 통한 학내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이다. 따라서 처벌의 방식에 있어서도 범죄 수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정학, 징계등이 아닌 다양한 방법이 이야기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교육의 의무화, 성폭력 신고 센터 설치 등도 필요하다.





자유2자유2

다들 비장한 각오로 후기를 썼군.

모든 일엔 늘 미련이 남기 마련이듯 이번 자유지에도 아쉬운 부분이 많네...지난 방학 자유지 주체를 맡기로 한 뒤, 사실 부담감이 컸었다.

1호때는 처음 시도하는 자유지라 의욕도 컸고, 처음이기 때문에 잘 만들지 못해도 처음이니까 그럴수 있지 하는 핑계라도 있었는데 2호는 1호보다 잘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자유지 기조를 정하고 오랜 스터디와 토론 끝에 글이 하나 둘 완성될 무렵 '이중섭' 사건이 불거지는 바람에 우리 자유지가 학내 추세와 약간 유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위의 말을 들을 때 좀 속상하긴 했지만, 여성문제는 그 어떤 것도 순위를 정할 만큼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것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유지를 어디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의 공론이 단지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 속으로 묻어내는 여성운동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나는 '여성운동가'라고는 당당히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여성주의자'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가을 바람이 차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길 바래.

우리는 영원한 동/지/

P.S 다들 정말 수고했고, '자유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 언니, 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유지 편집맡아 주셔서 정말 고맙구요, 수고하셨어요. 제가 꼭 밥한끼라도 살께요. 쏜다!!

소리가

우리가 유난스럽게 보이십니까?? 혹여나 우리가 시끄럽고 따지기 좋아하고 시비걸기 좋아하는 여인네들로 보이십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헌데, 좀 시끄러우면 어떻습니까. 무덤덤하게 집에 도둑이 들든, 어린 소녀에가 강간을 당하든 무심하게 흘려버리는 것보다야 낫지 않습니까.

평안하십시요. 아니, 주변이 시끄러운데 어찌 외면하시란 소린 아닙니다. 그저 시비걸 일이 있으시면 주변의 모든 억압하는 것들에 시비 거십시요. 그리고 그 주변의 몹쓸 것들에 의해 더 견고해지십시요.

-단기사천삼백삼십삼년구월열아홉째날 피존

어려웠소. 내용을 만들기가 참으로 어려웠소. 그래도 만드는 내가 즐겁고, 읽는 그대가 즐겁도록 내 노력하였으니 예정어린 눈길로 봐 주오.

그리고 모두들 수고하셨소. 특히나 이번 자유지의 주체를 맡았던 소리 그리고 편집을 맡아주심은 물론 전방위로 우리를 도와 주신 모 언니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지요. 자유지 가을호의 완성은 우리 모두의 승리이며 자랑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지요. 자유지를 통해 호주제의 문제점과 폐지를 널리 알리도록 합시다.

아.자.리

-네 Z-

가을이다. 23년 살아오면서 한번도 가을을 탄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는데 이번 가을은 유난히 넘기기가 힘든 것 같다. 내가 4학년이라는 부담감과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 내 삶에서여성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숱한 고민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리라.

나 사실 좀 농땡이 피웠다. 자유지 만드는데 지난 창간호만큼 애정가지고 작업하지 못했다. 그래서 녀석들에게 미안하다. 그러나 니들이 있기에, 내가 여성운동을 하기에 이 가을을 좀더 슬기롭게 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의 주제가 늘 그러하듯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해결하긴 정말 힘들지. 호주제 폐지또한 마찬가지다. 더 이상 객체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 주체가 되겠다는 게 왜 비난받아야 하는 일인가?

내 삶에 여성주의는 언제나 살아 숨쉬리라!!

추신:글 주신 호폐모의 아라님, 편집해주신 모언니, 그리고 함께 글 쓰느라 고생한 여위녀석들

진짜로 고마버요~

이상 바니지룽~

내 생에 마지막으로
하늘이 부여한 내 자유의지로
'여위'를 선택한다.

가슴 저미는 인간을
폭발하는 여성을
치열한 삶을 나는 알지 못한다.

허나
단 하나
내가 알고 있는 건

나의 가슴과
나의 영혼에
온기 가득한 피가
꿈틀대는 존재의 진실이

철저히
당당하게
자아를 지켜가고 있다는 것.

순간과 영원의 교통
육신과 영혼의 교감
이로써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경상대

여학생위원회에는요..

콩(최주언, 경영 99)

잔달(김성미, 경제통상 98)

네프(권지연, 경제통상 98)

피푼(윤현경, 경제통상 97)

쇼리(김경희, 경제통상 97)

바니(최신보경, 경영 97)

